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Save the Children



NPO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NPO공동회의



## Save the Children

2009년 11월 2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며,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비로소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선진국은 비단 경제지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시민정신과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지구촌 빈곤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까지 동반해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전과 달리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과 공익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비영리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부문의 성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기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7년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정부는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3,903억 원을 1,00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은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규모입니다. 외국 정부의 NGO 지원현황을 보면, 영국은 1996-7년 기준으로 167백만 파운드, 미국은 1997년 기준으로 927.7백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꾸준히 발전하여 온 바탕에는 정부 등 공공영역의 재정지원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가 정부와 NPO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간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한국NPO공동회의와 함께 『2009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발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NPO 관련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NPO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한국NPO공동회의 공동대표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장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 이후 NPO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활동영역도 다양해 복지, 빈곤, 인권, 여성, 환경, 국제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위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일한다거나 정부 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정부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중앙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총 3,904억 원,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 건수는 1,00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48조 3,368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데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너무나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와 변화추이, 부처별 배분액, 배분기준, 대상기관의 특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 배분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해 보고자 이 연구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관련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해외구호사업은 외교통상부, 대북사업은 통일부와 논의하는 식으로 정부 담당부처가 나뉘다 보니,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관련 법규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정부 지원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는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양자 간의 대화 기회를

# 축사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PO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재정적 자원 확보 및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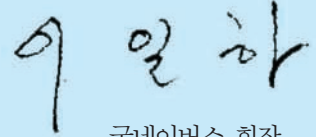
각 정부부처와 부처별 담당과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간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통해 23개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프로젝트명, 지원단체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조사를 이끈 조홍식 교수님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홍식 교수님의 선구자적인 정신과 열정으로 인해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가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서가 나오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한국NPO공동회의 초대이사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

## 연구요약

1. 연구방법 \_13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_14
  3.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_15
  4.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_18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기준 검토 \_32
- 부록 \_33

## 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1. 비영리조직(NPO)의 개념 \_35
2. 비영리조직과 유사 개념들 \_38
3. 비영리조직의 생성 및 성장에 대한 이론 \_43
4. 정부와 비영리조직과의 관계 \_47
5. 정부의 비영리조직 지원 제도 \_50
6. 비영리조직 분류기준과 체계 \_54

## I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1. 연구방법 \_61
2.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_63
3.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_67

## III.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_75
2. 교육과학기술부 \_77
3. 국가보훈처 \_80
4. 국가인권위원회 \_82
5. 국토해양부 \_85
6. 노동부 \_87
7. 농림식품수산부 \_90
8. 농촌진흥청 \_95
9. 문화재청 \_97

# Contents

- 10. 문화체육관광부 \_100
- 11. 방송통신위원회 \_104
- 12. 법무부 \_107
- 13. 보건복지가족부 \_108
- 14. 산림청 \_112
- 15. 식품의약품안전청 \_113
- 16. 여성부 \_115
- 17. 외교통상부 \_120
- 18. 중소기업청 \_124
- 19. 지식경제부 \_126
- 20. 통일부 \_127
- 21. 특허청 \_130
- 22. 행정안전부 \_132
- 23. 환경부 \_136

## IV.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기준 검토

-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 \_141
-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 검토 \_144

## V. 결론 \_150

## VI. 부록

- 1. 백서 작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과 고려 사항 \_157
- 2.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정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_162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_171

〈표 I-1〉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과 변화(1991-2008년)	39
〈표 I-2〉 국내 공익법인 현황(2001-2007년)	41
〈표 I-3〉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48
〈표 I-4〉 정부와 NPO 사이의 자원교환	51
〈표 I-5〉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 조세 감면	53
〈표 I-6〉 조회연의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NPO의 분류	55
〈표 I-7〉 한국민간단체총합의 민간단체분류(2009)	56
〈표 I-8〉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57
〈표 I-9〉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분류	59
〈표 II-1〉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교 (2009년)	65
〈표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68
〈표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70
〈표 III-1〉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75
〈표 III-2〉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76
〈표 III-3〉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76
〈표 III-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77
〈표 III-5〉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78
〈표 III-6〉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78
〈표 III-7〉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79
〈표 III-8〉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80
〈표 III-9〉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1
〈표 III-10〉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1
〈표 III-11〉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81
〈표 III-12〉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82
〈표 III-1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3
〈표 III-14〉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3
〈표 III-15〉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3-2009년)	84
〈표 III-16〉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84
〈표 III-17〉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6
〈표 III-18〉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6
〈표 III-19〉 국토해양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86
〈표 III-20〉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7
〈표 III-21〉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88
〈표 III-22〉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88
〈표 III-23〉 노동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89
〈표 III-24〉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1
〈표 III-25〉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2
〈표 III-26〉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7-2009년)	93
〈표 III-27〉 농림식품수산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94
〈표 III-28〉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5
〈표 III-29〉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5
〈표 III-30〉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96
〈표 III-31〉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97
〈표 III-32〉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8
〈표 III-33〉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98
〈표 III-34〉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7-2009년)	99
〈표 III-35〉 문화재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01
〈표 III-36〉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2
〈표 III-37〉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2
〈표 III-38〉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103

〈표 III-39〉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03
〈표 III-40〉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5
〈표 III-4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5
〈표 III-4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06
〈표 III-43〉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7
〈표 III-44〉 법무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08
〈표 III-45〉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9
〈표 III-46〉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09
〈표 III-47〉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3~2009년)	110
〈표 III-48〉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11
〈표 III-49〉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13
〈표 III-50〉 산림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13
〈표 III-5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 및 프로그램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14
〈표 III-5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1999~2009년)	114
〈표 III-5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15
〈표 III-54〉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16
〈표 III-55〉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17
〈표 III-56〉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118
〈표 III-57〉 여성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19
〈표 III-5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요사업예산 (2009년)	120
〈표 III-59〉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지원 현황 (2009년)	121
〈표 III-60〉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121
〈표 III-61〉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2005~2009년)	122
〈표 III-62〉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23
〈표 III-63〉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 (2009년)	125
〈표 III-64〉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125
〈표 III-65〉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26
〈표 III-66〉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27
〈표 III-67〉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27
〈표 III-68〉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28
〈표 III-69〉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29
〈표 III-70〉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129
〈표 III-71〉 통일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30
〈표 III-72〉 특허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 및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131
〈표 III-73〉 특허청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31
〈표 III-74〉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09년)의 유형별 사업 평가	132
〈표 III-75〉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33
〈표 III-76〉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134
〈표 III-77〉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35-136
〈표 III-78〉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137
〈표 III-79〉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137
〈표 III-80〉 환경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138
〈표 IV-1〉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검토되는 주요 심사기준(2009년)	145
〈표 IV-2〉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심사기준 (2009년~최근)	146-148
〈표 VI-1〉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분류기준 작업표(ICNPO 기준의 적용)	160-161
〈그림 I-1〉 셀러먼이 정리한 NPO의 정의	37
〈그림 II-1〉 정부부처별 지원 총량 대비 지원빈도, 지원액 비율 비교 (2009년)	66
〈그림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 (2009년)	69
〈그림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 (2009년)	71
〈그림 IV-1〉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절차 (2009년)	142

# 연구요약

## 연구과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NPO) 지원 백서

### 1. 연구방법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NPO공동회의’의 지원을 받아 중앙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정부가 2009년에 지원한 1,008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분석했고, 지원단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을 정리했다. 2009년 이전의 지원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 더불어 국내 NGO/NPO와 정부와의 관계 문헌,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기간은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였다.
- 본 연구조사는 연구진행을 위한 회의, 대정부 정보공개 청구(두 차례), 관련 연구 및 문헌 검토, 입수 자료를 토대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사업에 대한 분류 및 코딩, 분석 등을 거쳐 시행되었다.
- 연구상 한계 및 고려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 (1) 이 연구는 대정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한 포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에 대해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 간에 인식 차가 있어, 특별 프로그램이나 공모에 의한 지원만을 한정하여 통보한 부처도 있었으며, 일상적인 경상보조를 포함하여 통보한 부처도 있었다. 자료 해석 시에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 이 연구는 중앙정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서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총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이 이양된 후에 지방정부 재정으로 전환되어 집행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 형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이라고 정의했다.
- NPO와 유사한 개념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들 단체의 현황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 NPO의 한국적 생성 및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연구가 요구되어, 계약실패이론(시장실패), 공공재이론(정부실패), 다원주의와 자유, 결속과 단결이라는 일반적·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는 정부와 NPO와의 관계를 전제하여 논의하여야 하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본 백

서에서는 보완적 관계, 협조적 관계, 대립적 관계로 나누어 한국적 상황을 논의하였다.

- 정부의 NPO 지원 제도는 세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에 따라 모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정리하였다.
- 정부의 NPO 지원 현황을 논의하려면 지원을 받는 NPO의 유형분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분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NPO 유형분류 시도를 정리하였다.
- 본 백서에서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의거하여 NPO를 분류하고, 지원되는 사업을 분류하였다. 이 방식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셀러먼(Salamon) 교수가 제안한 것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단체에 대한 포괄적 분류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 1)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총론

- 본 연구에 포함된 정부부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23개 중앙부처이다. 해당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이다.

-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904억 원 정도이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248조 3,368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의 평균은 43.8개 단체였다. 법무부, 산림청처럼 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부, 외교통상부, 농림식품수산부와 같이 많게는 100개 단체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 간 편차가 컸다.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69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수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1,143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폭 넓은 편차가 있었다.
-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 8,800만 원 정도이지만, 수백억 원의 평균지원액을 받는 단체와 수백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 단계 및 고려사항에서도 밝혔듯이, 지원액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포함한 부처도 있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이나 ‘민간 위탁사업’의 일부만 포함한 부처가 있으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농림식품수산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가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위 5개 부처로 나타났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빈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문화재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액과 지원빈도를 비교해보면 농림식품수산부를 제외하고는 지원빈도와 지원액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원액이 많다는 것은 특정 민간단체에

많은 액수를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은 창업진흥회에 86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97% 정도나 차지한다. 반대되는 극단으로 지원빈도가 높지만 지원액이 적은 경우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여성부의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이 있다.

## 2)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 지원빈도가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단체(142건), 사회서비스(134건), 시민사회단체(133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기업·직업단체·노조(116건, 농수산축산업 직능단체, 전문직 연합, 노조에 대한 지원사업), 국제적 행동단체(1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액 순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600억 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41.1%나 차지하였다. 기업·직업단체·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평균지원액은 23억 8,770만 원 정도였으나 지원액의 중위값은 5,180만 원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사업 중 860억 원(50%)을 창업진흥원에 배분하고 있었다.
-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등에도 883억 원 이상(전체 지원액의 22.6%)이 지원되고 있었다.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단체에 대한 평균지원액은 14억 9,780만 원 정도였으나 지원액 중위값은 1억 9,500만 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원 중 절반 정도는 낙농진흥회에 원유수급조절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426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었다.
- 문화와 예술단체에는 600억 원 이상 지원되어 전체 지원액의 15.4%를 차지했다. 문화와 예술단체의 경우 평균지원액이 4억 7,347만 원 정도였으나 지원액 중위값은 2,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 경우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139억 원 내외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이 높았다.
- 한편 병원과 재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일 단체에 한정하여 183억 원 이상

의 고액이 지원되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적십자사에 지원한 적십자 병원 운영비이다.

-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 분야는 소득보조와 유지 분야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훈제도 등 공적 영역의 국가 복지정책이 이 분야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조직에 대한 지원,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사업, 종교집회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긴급상황과 난민에 대한 지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직접구호단체 지원, 동물에 대한 보호 단체, 레크리에이션 단체에 대한 지원도 낮았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액은 총 18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 사립대학 등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상), 학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지원사업, 국제개발 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등 소수의 사업만 포함되어 있다.

## 4.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 1) 공정거래위원회

-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 6개 비영리민간단체에 14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이는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724억 원의 2% 정도를 차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법과 법률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주로 소비자보호단체, 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소비자권의 옹호를 위한 소비자 활동, 각종 거래에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활동, 상품비교 정보 생산사업 등이다.
-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2억 9천만 원 정도의 소액을 지원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2) 교육과학기술부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54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는 부처 전체예산이 38조 4,163억여 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각급 사립학교,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관, 연구소 등이 이 부처의 지원으로 운영되리라 판단되지만 이 자료는 취합되지 않았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로 연구, 국제교류 분야에 지원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아태이론물리센터'로 24억 원(2009년 지원예산의 44.4%)의 지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전문헌 국역번역',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교원단체 파트너십 형성 사업' 등에 나머지 30억 원 정도를 나누어 지원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2007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고전문헌 국역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2008년에도 예산이 급증하는데 이때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확대되고 '아태이론물리센터'에 대한 예산보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3) 국가보훈처

- 2009년 국가보훈처는 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처 전체 예산 31조 8,886억여 원의 0.1%도 되지 않는다. 이 부처의 예산은 주로 보훈보상, 보훈복지, 보훈행정에 30조 원 정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인 455억 원 내외가 보훈선양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주로 보훈선양과 관련한 기념사업회에 집행된다고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의 2.4% 정도 내외만이 민간단체를 통하여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사업회나 송모회' 등이다. 지원액은 주로 이들 단체가 주관하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식, 기념식, 관련 문화행사,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

에 지원된다.

- 국가보훈처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 4) 국가인권위원회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처 전체 예산이 23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1.2%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기관의 절반 정도는 주로 인권, 민주화, 여성단체 등 ‘시민 및 옹호단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성폭력상담소, 문화센터 등 ‘사회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29% 정도 되었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인권에 대한 옹호, 대변,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단체에 활용되고 있다.
-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검토해볼 때, 62% 정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분류되었으며, 16% 정도가 인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지원되었다. 지원받는 단체의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소규모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단체가 소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 금액은 833만 원 내외로 제한적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예산은 ‘시민실천 프로그램’과 ‘인권단체협력사업’이 통합된 2005년 이래 2억 7,500만 원으로 동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5) 국토해양부

-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는 11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억 9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처의 일반회계계정 예산과 도로, 철도, 항만, 국가균형발전 등을 처리하는 특별회계계정 예산을 합하면 35조 3,107억 원 정

도 된다고 할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공공안전-법과법률서비스) 목적으로 7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은 주로 해양환경단체나 해양구조단체에 해양환경 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전년 대비 3.7% 정도 증액된 것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 6) 노동부

- 2009년 노동부는 5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50억 2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조 1,375억 원 정도의 노동부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1.3% 정도 된다.
-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통하여 연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1/3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기업·직업단체·노조의 범주에 속하는 노동단체 24곳에 연간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24% 수준이다. 그 밖에는 불교 및 기독교 단체, 한국국제노동재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지원에 27억 원 내외(18%)를 지원하고 있었다.
- 지원 프로그램 목적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통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노동단체운동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구에, 기타 단체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고용평등을 위한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 노동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증액요인은 고용보험기금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지원한 것,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인상

된 것,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제도가 생긴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7) 농림식품수산부

- 2009년 농림식품수산부는 111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43억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액수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보낸 자료에서 정부산하기관, 일반 기업을 제외하여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다. 전체 규모로 볼 때,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총액의 29.3%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이다. 이 부처는 15조 5,694억 원 내외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0.7% 정도 된다.
-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농어민, 축산인에게 전체 예산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572억 원 내외를 할당하고 있었다. 특히 낙농진흥회에 원유수급조절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426억 5천만 원(전체 농림식품수산부 지원액의 37.2%)을 할당하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단체와 이들의 자조단체에 자조금 형태로 385억 원 정도(33.6%)를 지원하고 있었다.
- 지원 프로그램 분류를 살펴보면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영역이 가장 많은 지원빈도와 지원액을 기록했다. 지원액은 877억 원 정도로 전체 지원액의 76.4%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속하는 활동으로 각종 자조금, 생산품 출하시기 조절, 농수산물유통체계 유통체계를 비롯한 상거래 지원, 농수산물소비 증진을 위한 제반 홍보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지원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프로그램은 도농교류, 도농연대교육 등 체험식 선농(先農)행사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업의 특성상 지원빈도에 비해 지원액은 20억 원 정도(1.8%)로 낮게 나타났다.
- 종합하자면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농어민, 축산인 당사자의 생계와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23억 원 정도, 즉 24.8%나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농촌정보문화 센터를 비롯한 선농증진 사업, 농어업 농어촌 가치 소비 촉진 홍보, 농축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장된 결과이다. 또한 이 시기에 낙농진흥비, 각종 자조금 기금, 축산농가 생산량 조절 등 농어촌 지역의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다소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8)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8억 4천만 원 정도로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었다. 2009년 현재 농촌진흥청은 6,22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3%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다.
- 농촌진흥청은 관련법에 의하여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그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세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액에 따라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 9) 문화재청

- 문화재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87억 3천만 원 정도로 문화재청이 4,21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4.4%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 문화재청은 주로 문화/역사단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는데 전체 82건의 지원 중에 51건, 전체 지원액 대비 88.6%가 문화와 예술 분야의 단체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이 139억 4천만 원 정도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74.4% 정도가 집중되었다.
- 문화재청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재지킴이활동 공모사업'(단체당 300만 원~1,000만 원 지원),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사업'(1,000만 원~3,400

만 원 지원) 등이며, 그 밖에 고유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단체, 천연기념물 보호단체, 국제문화재 등록 혹은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한 국제행동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 문화재청의 정부 지원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이래 연간 10.8~18.3% 증가했고, 2년 동안 지원액이 44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 증액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 10)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96억 원 정도로 2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1조 6,82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5%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는데 전체 34건의 지원 중에 23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 분야의 단체에 지원되었다. 지원액도 93억 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 대비 96.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단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지원액의 규모는 매년 그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7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하여 진행된 ‘문화역사마을’ 건립에 2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면서 인상이 전년 대비 211.5%나 되었다.

#### 11)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24억 원 내외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약 2,791억 원과 비교해볼 때, 전체 예산의 15.2%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 편인데, 주로 방송 분야에 대한 지원(전체 예산액의 73.4%)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중에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아리랑구제방송' 지원금액이 연간 247억 원이나 되어 전체 예산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통화품질개선, 방송환경개선, 문예콘텐츠 활성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 권익 옹호,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등을 위시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금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06억 원 정도로 6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였다. 2009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단체의 수는 대폭 줄었으나, 지원액의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다.

## 12) 법무부

- 법무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억 5천만 원 정도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의 전체 예산이 2조 2,451억 원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 한편 2010년부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11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 13)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570억 원 정도로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큰 지원규모를 차지한다. 2009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18조 5,025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3%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

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본 자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종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제외 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빈도를 본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로 사회서비스단체(18건), 시민 및 옹호단체(12건), 기타 건강서비스단체(12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았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본다면,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지원액의 52.6%인 300억 원 가량이 기타 건강서비스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90% 정도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이었다.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지원이며 연간 174억 원 이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액의 30.5%라 할 수 있다. 남은 17% 정도의 지원금을 기타 사회서비스단체, 시민 및 옹호단체가 나누어 보조받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 변동 추이를 살펴본다면 지원단체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요인은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병원기능보강에 대한 요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출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14) 산림청

- 산림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그린레인저(한그루녹색회)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산림청이 1조 9,645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15)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5억 원 정도로 식품안전정보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지원하였다. 이

중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30억 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변동을 살펴보면, 이 부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2곳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09년부터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원단체가 3곳으로 늘었다. 2002년, 2005년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09년에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전체 지원총액은 대폭 증액되었다.

## 16) 여성부

-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0억 원 정도로 10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관 수로만 보면 정부부처 중에 4번째로 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총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09년 현재 여성부가 666억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6%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개별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3,800만 원 내외이며, 중위값은 1,600만 원 내외로 작은 편이다.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성매매 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과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 여성부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민 및 옹호단체'와 '사회서비스 단체'의 빈도가 각각 29건, 28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원액을 살펴보면, '긴급상황과 난민', '법과 법률서비스 관련 단체'에 각각 12억 원, 1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인데, 이는 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던 '사회서비스 단체', '시민 및 옹호단체'의 평균지원액은 2,000만 원이 넘

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났다.

- 여성부 지원액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원액이 점증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가장 주목하여 보는 사업은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2006년도 20억 7천만 원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17)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93억 원 정도이다. 지원기관 수는 109개로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크며,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총액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09년 현재 외교통상부가 1조 2,57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액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정부예산 중에 개도국 원조 예산이 3,172억 원이며, 이 중에 2.9%가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밝힌 2009년 NGO 관련 예산은 대부분 ‘민간단체 지원사업’, ‘NGO봉사단 파견 지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 인지기강화사업,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국제행동단체 74개, 고등교육단체 22개로 나타났다. 국제행동단체의 경우 단체의 사명이 국제구호 분야로 한정된 경우도 있었고, 국내외 복지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 경우 국제적 기반의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알려진 단체는 국제행동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고등교육단체는 주로 개발협력 인지기강화사업에 참여한 ‘대학교’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개발협력 인지기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전년도에 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이 30억 원 이상이 증액되었다. 2009년도의 증액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점증적 상승과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으로 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요인이 컸다.

### 18) 중소기업청

- 2009년 중소기업청은 4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888억 5천만 원으로 정부부처 중에 농림식품수산부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부처에 속한다. 중소기업청의 2009년 예산인 2조 2,296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의 4%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단체는 창업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개발협회, 중소기업이업종(異業種)중앙회로, 창업진흥원이 860억 원, 즉 전체 중소기업청 지원금의 96.8%나 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5년 118.8% 증액된 이래 정체되었으나, 2009년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한국창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체 정부 지원액이 1,344.7% 증액되었다.

### 19) 지식경제부

- 2009년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9억 원으로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 절약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전체 예산이 13조 9,091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시민연대에 대한 지원액은 2007년까지 12억 원이었으며, 2008년 14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후에 2009년에는 대폭 삭감되어 9억 원이 지원되었다.

## 20) 통일부

- 통일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8억 6천만 원 정도로 5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었다. 2009년 현재 통일부가 7,643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 전체 예산의 0.6%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 2009년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42억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고,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예산 중 6억 6,310만 원을 배분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지원(정신건강 지원, 여성 사회적응 지원, 고령자 지원)', '시범공모사업 지원(의료 지원체계 구축·운영, 전문상담인력 양성, 학교인식개선사업, 가족적응 지원)', '자유공모사업 지원',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사업에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 의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회서비스단체'로서 탈북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운영, 학교인식개선 사업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6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예산이 3억여 원에서 17억 원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9년 42억 원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라는 통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9년 3억 5천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 21) 특허청

- 특허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5억 3,700만 원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청년발명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 특허청의 2009년 세출예산이 3,746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4% 정도의 예산이 지원금으로 활용된 것이다.

- 특허청의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1년 1억 4,7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매년 20~40%대의 증액이 있었으며, 2009년에는 15억 1,70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 2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민간협력과(2009년에는 안전정책협력과)를 주무부서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하여 매년 49억 원의 재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1999년 예산이 33조 613억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포괄하여 지원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는 시민 및 옹호단체이며, 그다음으로 국제적 행동, 사회서비스, 환경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9억 원의 예산에서 변동이 없었고, 지원단체 수만 118개에서 159개로 증가되었다.

## 23) 환경부

- 환경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25억 5천만 원으로 10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연간 예산은 6조 64억 원이다. 따라서 전체 예산 대비 지원액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환경관련 단체 9곳, 동물관련 단체 1곳이다. 환경관련 단체 9곳이 평균 1억 6천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며, 중위값은 1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물관련 단체는 2008년 2월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곳에 11억 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08년도부터 12개가 급감하

였는데, 2008년도부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지원 기관 수가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은 2008년도에 20.1% 급증한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기준 검토

###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절차는 대개 ‘사업시행계획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1차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 제출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 검토

- 2009년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된 것은 능력과 전문성, 효과성, 타당성, 적합성, 과거의 경험, 자기부담 및 책임성 등이었다. 각 심사기준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아울러 부처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부록

- 부록에서는 백서 작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을 적용할 때의 난점과 백서 이해에 주의할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 아울러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하였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단체의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 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 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 1. 비영리조직(NPO)의 개념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그 형태와 모습이 다양하기에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 한글 합성어로서 ‘비영리’라는 말은 영리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유주나 이해당사자의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기업과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결사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문자적인 설명을 통해 정리해보자면 비영리조직은 ‘사람들 대다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결사’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 UN(2003)에서는 NPO의 개념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1) 운영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분이 금지되어 있으며 조직의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 이는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특성이다.
- 2) 그들이 생산하는 사적 제품이 무엇이든 간에, 공공재의 생산에 관여한다.
- 3) 수입구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자발적 시간과 자금을 포함한다.
- 4) 유급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 5) 이윤 분배를 금지함으로써 공평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 6) 여러 국가에서 특별세제혜택의 자격을 받는다.
- 7) 지배, 요건의 보고,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다.
- 8) 공공재 제공에 관여하지만 지배정부가 갖는 힘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셀러먼(Salamon, 1999)이 제시한 비영리조직이 지니는 6가지 중요 특징을 기준으로 비영리조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조직(organizations)

비영리조직은 제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직은 '제도적 실재'(institutional reality)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제도적 실재'란 적정 정도의 내적 조직구조와 더불어, 목적, 구조, 활동의 지속성, 의미가 있는 조직 경계, 조직의 정관 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더라도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모임은 비영리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2) 민간부문(private)

비영리조직은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기구의 일부도 아니며, 정부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규제,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영리조직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배분받을 수도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일련의 규칙에 대하여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비영리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무역협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녔다면 정부를 대신하여 산업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있다.

### 3) 이익무분배(non-profit distributing)

비영리조직은 소유주, 조직원, 이사, 설립자, 기부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사회사(私會社)가 소유주,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것과 다르기에 시장의 일반적 원칙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수익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조직의 기본 목적과 부합하는 분야에 재투자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스만(Hansmann, 1980)은 비영리조직의 이러한 이윤배분을 억제하는 측면이 가장 특징적이고 정확한 정의라고 언급하였다.

### 4) 자치성(self-governing)

비영리조직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 즉 비영리조직은 자치를 위해 자체적 의사결정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조직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 5) 자발성(voluntary)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활동과 운영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직원들도 역시 수많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 6) 공익성(public sector)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공익에 기여한다. 이것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이윤을 생성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종합해본다면, 비영리조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그림 1-1〉 셀러먼이 정리한 NPO의 정의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비영리조직과 유사 개념들

김준기(2006)는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개념들로 (법률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최근의 추이를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1) (법률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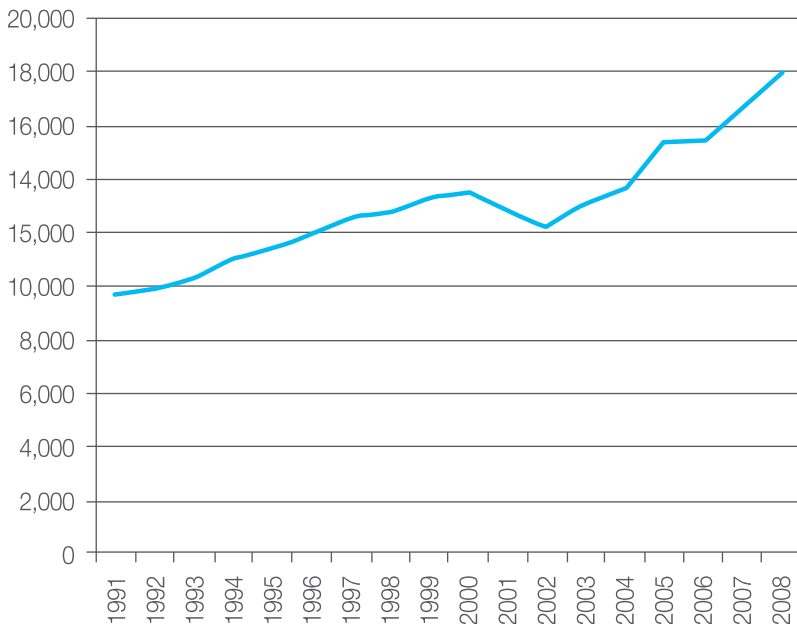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2000년에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하며, (2) 잔여 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을 받으며, (3) 정치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고, (4) 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적어도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5)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앞에서 정의한 비영리조직보다 협의의 개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의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상을 좁혀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법규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성, 이익무분배, 조직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서에 등록된 법인자격을 획득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 비영리단체의 경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

〈표 I-1〉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과 변화(1991-2008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비영리법인수	9,716	9,936	10,326	11,050	11,487	11,959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영리법인수	12,575	12,817	13,295	13,532	12,791	12,274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영리법인수	13,132	13,685	15,406	15,448	16,669	18,023



출처: 국세통계연보

는 비영리법인의 범주는 사립학교, 대학교, 대규모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및 여가 조직, 연구소, 종교단체, 전문직업인 및 학술단체, 재단이나 협회로서 설립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보다 대상에 있어서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얻는 세제혜택은 고유목적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수가 1만 8,023개로 나타나 있다. 1991년도에 비해 85.5%나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매년 3.5%의 비영리법인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01~2002년도에 정체상태에 있었던 비영리법인의 수가 2003년부터 상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 3)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및 학문연구를 위한 재원조성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단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 「상속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은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하위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1) 교육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종교단체나 사립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3)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둔 병원,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 (5) 문화예술조직, (6)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조직, (7)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8) 기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를 포함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회계서류나 사업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표 I-2〉 국내 공익법인 현황(2001-2007년)

종류 연도	계	활동 구분						
		학교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1991	3,790	1,070	785	641	125	180		87
1992	3,920	1,070	854	653	138	189		103
1993	3,995	1,077	849	656	146	197		129
1994	4,230	1,058	953	703	176	187		170
1995	4,461	1,055	1046	768	197	205		200
1996	4,624	1,079	1114	808	237	215		233
1997	5,269	1,101	1157	907	261	195		291
1998	5,221	1,081	1204	872	276	189		290
1999	5,486	1,096	1200	906	264	220		345
2000	5,773	978	1160	792	227	207		432
2001	11,063	1,727	1,826	1,972	382	3,810	351	995
2002	10,987	1,531	1,862	1,962	380	3,890	365	997
2003	11,177	1,512	1,896	1,970	377	3,881	367	1,174
2004	17,812	1,685	2,333	2,129	457	8,561	391	2,256
2005	26,517	1,749	2,732	2,505	452	16,414	451	2,214
2006	27,500	1,858	2,837	2,617	478	17,135	493	2,082
2007	27,793	1,751	2,937	2,692	495	17,591	561	1,766

출처: 국세통계연보

\* 1991~2000년까지의 통계의 경우 활동구분 합계와 공익법인의 수가 불일치하는데, 이는 통계작성 시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활동구분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임.

\* 1991~2000년까지의 통계의 경우 활동구분상 문화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구분이 없었음.

의 역할을 보완하기 때문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공익법인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으로 볼 때, 2000~2001년, 2004~200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세적정리 작업을 통하여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조직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4) 시민단체

한국에서 시민단체란 주로 비정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을 이야기한다. 그 성격상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기보다는 시민의 의사(voice)를 대변하는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계 사회단체, 기타 사회서비스 단체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단, 의료재단 등은 제외된다.

#### 5)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복합적인 의미로 설명된다.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대변적 비정부조직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화단체, 소비자·생활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법·행정·정치개혁관련 단체, 인권단체, 평화·통일·민족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빈민단체, 노동·농어민단체, 국제구호단체 등의 가치 및 신념에 근거하여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을 칭한다(김준기, 2006). 김준기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를 운동방식의 급진성 정도에 따라 연성(soft) 시민사회단체, 경성(hard)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국가와 가족 사이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결사체들이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주성수, 2001). 보다 구체적으로는 NGO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의 회원단체, 재단 및 기업협회, 전문협회, 미디어, 두뇌집단, 연구집단 및 훈련기관, 신용조합과 상조회, 협동조합, 풀뿌리조직과 지역기반조직, 교회와 모스크, 기도단체 및 종교기관, 대학, 스포츠단체, 문화예술단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는 뒤에 논의하게 될 UN의 국제 NPO 분류기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UN, 2001).

#### 6) 시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에 경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실

현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주로 대변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동지향적’ 단체를 지칭한다. 이들 단체는 대개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급진적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및 정치체계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성’ 사회단체로 분류되기도 한다.

### 7) 관변단체

관변단체는 국가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활동의 영역으로 삼는 준공공적 조직(quasi-autonomous NGO)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김준기(2006)는 관변단체가 정부에 유용한 정책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위임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호의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예로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질서의식이나 예의범절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들 수 있다.

## 3. 비영리조직의 생성 및 성장에 대한 이론

“비영리조직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가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그 형태도 다양하고 이들의 생성과 성장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내어 놓기 어렵다. 현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각론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스미스와 그웬버그(Smith & Grønbjerg, 2006)는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설명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 1) 수요공급관점 모델: 이 모델은 정부와 NPO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논의를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 2) 시민사회/사회운동 모델: 이 모델은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정부와 비영리조직 사이의 관계에서 복잡한 다이내믹을 만들어 내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뒷부분에서 다윈주의, 시민참여, 자원활동 등과 같은 공급자 이론의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3) 지배나 신제도주의 모델: 이는 비영리조직을 비롯한 사회구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화되는 맥락에 대해 설명한다.

김준기(2006)는 그 논의를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수요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은 비영리조직이 시장이나 정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생겨나서 발전해왔다는 견해다. 이 입장은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설명하고, 현재의 비영리조직의 모습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반영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공급적 요인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비영리조직을 운영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하자면 NPO는 ‘필요에 대한 반응’이며 ‘선한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백서에서는 셀러먼(Salamon, 1999)이 비영리부문의 존재 이유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본틀로 삼아 정리하고자 한다.

### 1) 계약실패이론 — 시장실패

계약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시장기구의 원천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의 역학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의 바탕에는 ‘소비자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수요

에 따라 그것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있게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의하여 충분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되어 시장 참여자 모두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시장은 도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적 소비재를 취급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부른다.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지니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못한다. 콜락(Kollock, 1998)은 ‘공공재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공공재는 비배타성으로 인해 서비스 생산자가 재화의 생산과 유지에 기여하지 않고 즐기고자 하는 유혹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는 무임승차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의 비공급 문제를 낳게 되어, 공공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정은 탐욕에 기반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잘 속는 풋내기(sucker)가 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나온다. 또한 공공재의 속성으로 다른 사람이 쓴다고 나의 몫이 줄지는 않는 비경합성을 들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공공재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로 ‘공공의 딜레마’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하딘(Hardin, 1968)의 공유지 연구에 의해 분명해졌다. 하딘은 일군의 목축업자에게 공유지를 주고 자신의 소를 자유롭게 먹이도록 하였다. 각 목축업자의 이해는 많은 소를 그 곳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공공에 손해가 발생했다. 목축업자가 소를 추가하면서 생기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되면 공공의 피해는 모든 집단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만약 모든 목축업자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은 황폐화되고 모든 이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공공자원의 비배타성 문제가 나온다. 공공재와는 달리 공공의 딜레마에서 주된 요소는 이득의 감소가능성(subtractability)이다. 이는 비경합성의 반대개념으로, 내가 나무를 자르고, 물고기를 잡고, 물을 쓰면, 다른 사람 것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시장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여 공공재의 부족을 보충하고,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자산을 보호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의 자원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국민들의 이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충될 수밖에 없어서 합의에 이르기 힘들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도 채우지 못했던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을 비영리조직이 하게 되었고,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2) 공공재이론—정부실패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점이 바로 ‘정부의 실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 성원의 동의를 통해 정책이 집행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수 있다. 소수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과했던 소수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도 ‘정부실패’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샐러먼(Salamon, 1999)은 사람들이 비영리조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운영상의 번거로움과 관성, 관료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경우에 세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과 관성들로 인해 사람들이 비정부적 매커니즘, 즉 NPO를 선호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NPO가 많은 이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거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직접적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행정자료를 공유하거나, 우편요금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다양한 협조를 통하여 지원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반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NPO의 존재와 성장을 설명하는 입장이 상호의존이론이다.

### 3) 다원주의와 자유

NPO는 서비스의 영역,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 개인의 독창성과 노력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NPO도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독창성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자’로서 조직과 조직구성원을 강조하는 방식의 논의는 ‘공급자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한 이전의 논의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 비영리기관의 필요성만으로 이들 기관의 출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영리기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공급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도덕적 확신, 이데올로기적 관심, 종교적 대의에 의해 지지를 얻기 위한 욕망,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정의감, 전문가적 관심, 창조적 발상을 위한 갈망, 기타 수많은 고려 속에서 동기화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많은 영역에서 비영리기관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 4) 결속과 단결

NPO가 조직체라는 점은 결속과 단결의 필요에 대한 공감의 결과일 것이다. NPO는 이러한 결속과 단결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의지의 반영으로 생성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속과 단결은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NPO의 생성은 그러한 구심점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4. 정부와 비영리조직과의 관계

한국에서 정부와 NPO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화 논의가 있다(박상필,

〈표 1-3〉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자	분류기준	유형
박상필(1999)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종속형, 협력형, 자율형, 권위주의억압형, 민주적포섭형
신광영(1999)	정부의 태도와 NGO의 조직유형	포섭적관계, 갈등적관계, 협조적관계, 지배적관계
권해수(1999)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자율관계, 관용관계, 갈등관계, 억압관계
김준기(2000)	자원의 대체가능성과 중요성	상호의존관계, 일방적 의존관계, 상호독립적 의존관계
신희권(1999)	자금조달과 통제, 의사소통과 접촉	통합된 의존, 분리된 의존, 통합된 자율, 분리된 자율
오재일(2000)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 NGO의 자주성	포섭적/무관심관계, 후견적관계, 갈등적관계, 동반자관계

1999, 신광영, 1999, 권해수, 1999, 김준기, 2000, 신희권 1999, 오재일, 2000).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해당 학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론적 준거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본 백서에서는 상기 이론적 전제를 모두 검토하지는 못하고 정부와 NPO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 협조적, 대립적 관계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보완적 관계

정부와 NPO와의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정부측의 실패에 대한 보완, NPO측의 실패에 대한 보완 양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 정부가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수요를 NPO가 충족시키며, 정부보다 민첩하게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부합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NPO가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 즉 ‘NPO의 실패’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도록 정부가 NPO를 지원해줄 수 있다. 셀러먼(Salamon, 1987)은 NPO의 실패를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 **박애적 불충분성:** NPO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박애적 배타주의:** NPO가 특정 대상의 수혜자에게 주목하게 되면서 서비스

이용가능성에서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 **박애적 온정주의:** NPO가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조직의 활동, 내용, 방식이 결정된다는 점
-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NPO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전문적인 NPO에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조직에게 등록자격을 주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NPO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박애적 불충분성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2) 협조적 관계

협조적 관계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NPO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조체계를 말한다. 협조적 관계는 보완적 관계 이상의 밀접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협조적 관계는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민영화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민간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부문의 참여로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협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관변단체(유사NPO) 중심의 국가 지원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가 지향하는 바가 누구를 위협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대립적 관계

대립적 관계는 NPO가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과와 실행

에 대하여 대립적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실행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부의 결단을 촉진하고자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관계이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대변형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감시운동, 환경보존운동, 최근의 촛불운동 등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도 대립적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부실 NPO의 내부구조에 대한 관리감독, ‘잔여소득배분금지’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세무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정부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조직(예: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반정부 시위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금지/중단 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립적 관계의 양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 단체 중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공모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5. 정부의 비영리조직 지원 제도

정부와 NPO가 관계를 지니고 있다면 조직 간 교환에 주목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권(2006)은 정부와 NPO 사이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과 부정적 자원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긍정적 자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NPO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든지, 행정지원 및 협력, 우편요금 감면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당 조직이나 후원자에게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조달 및 위탁사업신청시 자격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다양한 시민참여기제를 만들어 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표 1-4〉 정부와 NPO 사이의 자원교환

	정부	NPO
긍정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민간단체 지원</li> <li>- 간접적 민간단체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우편요금감면 (25%) 등)</li> <li>- 세금감면 및 세금 공제제도</li> <li>- 조달 및 위탁사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통해 NPO의 비교우위의 제공</li> <li>- 시민참여 장치의 마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참여, 순응, 지지, 협력</li> <li>-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제공</li> <li>- 전문인력 및 조직 동원</li> <li>- 정책형성 및 진행참여</li> <li>- 갈등 중재자 기능</li> </ul>
부정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특혜의 중지 및 방해</li> <li>- NPO의 수입원에 대한 압력행사</li> <li>-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li> <li>- 세법규정의 강화, 세무사찰</li> <li>- 비민주적 탄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li> <li>- 언론을 통한 비판적 여론 조성</li> <li>- 정권퇴진, 반정부 시위</li> <li>-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의견</li> </ul>

두었는데 정부지원의 세부적 측면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 1) 보조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위탁사업을 공고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 본 백서의 주된 초점은 NPO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둔다. 아울러 사업공모 등에 의해 정부위탁사업에 참여하는 NPO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가 된다. 이들 지원의 면모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는 II부 이하에서 논의될 것이다.

## 2) 조세 감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조세 감면은 비영리민간단체 자체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원의 부담자인 후원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상당수의 비영리조직은 ‘지정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는 15%이므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렇게 ‘지정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단지 5년간 유효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고 정치적·종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단체를 소득공제 대상단체로 선정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sup>2</sup> 하지만 세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稅收)와 연관지어 ‘보수적’인 경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3)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 완화

임승빈(2009)은 938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 전체 예산의 70~100%를 회비, 기부금, 자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약 60%에 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NPO가 많다는 의미의 반영이며, 모금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과거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962, 1970)」의 경우 전쟁 직후 무분별한 기부금품 강요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되어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 후에 모금 허용범위가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이 법은 「기

---

2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index.htm](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index.htm) 연말정산 관련 페이지에 해당 메뉴를 두고 리스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표 I-5〉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 조세 감면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②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조특법 제73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④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50%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⑥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의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⑦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출처: 국세청(2009), 2009년 귀속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금품모집규제법(1995)』으로 개정되었는데, 모금허가의 기준을 구제, 구휼, 자선사업 이외의 공익영역으로 넓히고, 사회단체의 회비모금에 대한 금지 및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이 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기부금품은 국가, 지자체, 언론, 금융기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모금해야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기부금품 모금에 활용되는 필요경비를 전체의 2%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통상 기준과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그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변화하게 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2006)』에서는 기부금품 모금의 허가요건을 등록요건으로 완화하였으며,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필요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우편요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행정지원 및 협력과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 공익인사의 참여, 시민대표의 참여 기회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사안의 중요성, 공무원의 의지, 정부의 정책 기조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6. 비영리조직 분류기준과 체계

NPO 연구를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NPO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분류하는 작업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NPO를 바라보는 조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분류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포괄성과 차별성이다. 포괄성은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NPO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별성은 특정 유형에 속하는 NPO조직을 각 기준에 맞추어 수월하게 분류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NPO와 이를 둘러싼 유사개념 사이에서도 불명확한 공유영역이 있으며 사회적 합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갖기 힘들다. 정부의 NPO 지원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영역도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백서에서는 국내의 분류시도를 정리해보고, 국제적 분류기준으로서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제시하고 이를 백서 정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1) 국내의 분류 시도

### (1) 국내 개별학자에 의한 분류

조희연(2001)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라 NPO를 <표 I-6>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조직의 목적, 활동영역과 관련된 주요단체를 적절하게 연결지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영역을 살펴볼 때, 시민단체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태규(2000)는 한국의 NPO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수정하여 오락문화, 교육연구, 보건, 사회복지, 시민단체, 종교, 전문가단체로 분류하여 노동자 수, 자원봉사자 수, 총지출 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표 I-6> 조희연의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NPO의 분류

목적	구분	
	활동영역	주요단체
공익단체	의료보건단체	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중등·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단체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 (2)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

한국민간단체총람(2009)은 국내의 시민단체, 이익단체, 직능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를 종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7,570개

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한국민간단체총람 편찬위원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기준이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이 분류기준은 대분류 20개 중 일부는 조직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일부는 조직의 사업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분류와 소분류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추모사업이 인권의 하위항목으로 연결된 점, 의식계몽이 정치/경제의 하위항목에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표 1-7〉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민간단체분류(2009)

대분류	소분류	해당 단체수
환경	감시/정책제안, 환경보호, 교육/연구/계몽	955
인권	인권일반, 추모사업	218
평화/통일	평화, 통일/민족	318
여성		503
권력감시	권력감시일반, 행정부/국회/사법, 기업/언론	104
정치/경제	정치/행정, 경제, 과학기술, 지역자치, 의식계몽	811
교육/연구	교육, 연구	342
문화/체육	예술, 문화, 체육, 기타 문화	302
복지	복지일반, 의료/보건, 장애인, 노인, 기타 복지	1,511
청년/아동	청년, 청소년, 아동	703
소비자권리		69
도시/가정	도시일반, 교통, 주택, 가정	256
노동/빈민	노동, 농어민, 빈민	243
외국인	외국인복지, 노동자, 다문화	105
모금		30
자원봉사		609
국제연대	국제원조, 국제협력, 재외동포	119
대안사회	공동체, 생협, 교육/연구/계몽	116
온라인활동		102
기타		154

## 2) 국제적 분류시도

### (1)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세계은행(2007)은 시민사회영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기관단체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라 칭하였다. 세계은행의 시민사회팀은 시민사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면서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조직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한 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많다고 하였다.

〈표 I-8〉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기능구분	역할	관련 조직 예
대표(representation)	시민집단의 목소리를 집합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조직	- 노동조합, 여상단체, 농민단체를 포함한 회원 조직 - 비정부조직, 연합회, 상부조직이나 네트워크 - 신앙기반의 조직 - 토착민 조직
기술적 전문자문 (technical expertise)	연구를 수행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조직	- 전문협회, 기업협회 - 두뇌집단이나 연구조직
옹호(advocacy)	특정 이슈에 대해 옹호하는 조직	- 무역협회 - 비정부조직 - 인권집단 - 뉴스와 미디어 집단 - 시위조직
역량구축 (capacity-building)	지역사회집단이나 다른 시민사회조직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 재단(지역, 국제, 지역사회) - 시민사회조직 지원 조직 - 훈련 조직
서비스 전달 (service-delivery)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조직	- 지역, 국가, 국제비정부 조직 - 신용 및 상호부조 연합 - 비공식, 풀뿌리, 지역사회기반의 결사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s)	집합적 레크리에이션과 다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 문화조직 - 스포츠클럽 외

## (2) 국제표준산업분류방식(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김준기(2006)에 따르면, UN에서 고안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방식은 국가간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1948년도에 고안되었다. 이 방식은 NPO의 범주에서 소득의 50% 이상을 수익사업 또는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조직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일부의 NPO만 포함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ISIC의 NPO에 포함되는 NPO는 교육(초등, 중등, 평생교육), 의료 및 사회사업(일반보건서비스, 동물보건서비스, 사회사업), 기타 공동체·사회·개인을 위한 활동(위생, 사업 및 전문업, 노동조합, 기타 회원조직, 연예계, 보도조직, 도서관, 문화조직, 스포츠 및 여가조직 등)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NPO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분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3)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

존스홉킨스 대학의 셀러먼(Salamon)과 안하이어(Anheier) 교수는 앞에 제시된 UN의 ISIC의 방식을 개선하여 국제비영리부문의 분류기준인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고안해냈다(UN, 2003). 앞의 ISIC방식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최근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생기는 NPO의 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은 ISIC(3판)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존스홉킨스 비교비영리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함께 완성하였다. 이 자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NPO를 분류하면서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책에서는 정부의 NPO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할 때 NPO조직의 분류를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기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기준이 UN이라는 국제조직에서 공인한 분류방식이며, 동서양의 다양한 국가의 NPO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조직유형이 포괄되는 분류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초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I-9〉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분류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100	문화와 예술	방송통신, 시각예술, 건축, 공예, 공연예술, 역사, 문학, 인문협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다목적 문화예술단체 등
	200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클럽,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조직 등
	300	서비스 클럽	서비스 클럽, 다 목적 서비스 클럽 등
2 교육	100	초중등교육	초, 중등 교육
	200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
	300	기타 교육	직업/기술학교, 성인/평생교육, 다목적 교육조직 등
	400	연구	의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등
3 건강	100	병원과 재활	병원, 재활병원
	200	요양원	요양원
	300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정신과병원, 정신보건치료, 위기개입, 다목적 정신건강조직 등
	400	기타 건강 서비스	공공보건교육, 의료처치(주로 외래), 재활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다목적 보건서비스 조직 등
4 사회서비스	100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주간보호, 청소년서비스, 청소년복지, 가족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자조 및 다른 대인사회서비스, 다목적 사회서비스 조직 등
	200	긴급상황 및 난민	재난/응급 예방, 구호 및 통제, 일시 쉼터, 피난처 지원, 다목적 응급 피난 지원 조직 등
	300	소득보조 및 유지	소득 지원 및 보전, 물질 원조, 다목적 소득 지원 및 보전 조직 등
5 환경	100	환경	공해 감소 및 통제, 자연자원 보전 및 보호, 환경미화 및 open spaces, 다목적 환경조직 등
	200	동물	동물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보존 및 보호, 수의서비스, 다목적 동물서비스 조직 등
6 개발과 주거	100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및 근린조직, 경제개발, 사회개발, 다목적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조직 등
	200	주택	주택 연합, 주거 지원, 다목적 주거 조직 등
	300	고용 및 훈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상담 및 지도, 직업재활 및 지원 작업장, 다목적 고용 및 훈련 조직 등
7 법, 옹호, 정치	100	시민 및 옹호단체	시민 결사체, 대면 조직, 시민권 협회, 인증 연합, 다목적 시민 및 옹호 조직 등
	200	법과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범법자 재활, 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조직, 다목적 법률 서비스 조직 등
	300	정치조직	정당, 정치행동위원회, 다목적 정치 조직 등
8 자선매개 및 봉사증진	100	교부금 모금 조직	교부금 모금 재단
	200	다른 자선 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자원봉사증진 및 지원, 다목적 자선 매개 및 봉사조직 등
9 국제	100	국제적 행동	교류/우호/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조직, 국제재단 및 구호조직, 국제 인권 및 평화조직, 다목적 국제조직 등
10 종교	100	종교집회 및 단체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유대인 회당, 힌두사원, 신사, 무슬림 모스크, 복합종교조직 등
11 경영 및 전문직조직, 노조	100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기업연합, 전문직 연합, 노조, 다목적 기업, 전문지 결사 및 노조 외
12 기타	100	기타	기타

## I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 1. 연구방법

본 연구진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NPO공동회의’의 지원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NPO들이 어느 부처의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며 각 부처별 등록 NPO의 리스트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았다. 그 다음 각 NPO가 소속된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

- 중앙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의 현황과 추이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NPO) 지원 백서 구성

### 2) 연구대상

- NPO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현황
- NPO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각종 제도

### 3) 연구자료

- 정부가 2009년에 지원한 1,008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을 검토
- 이전에 지원한 내역이 가용한 경우에 각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을 검토
- 국내 NGO/NPO와 정부와의 관계 문헌,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 자료

### 4) 조사절차

- 2010년 1월초: 연구 진행을 위한 회의
- 2010년 1월~2월: 정부에 정보공개 1차 청구 및 보완(한국NPO공동회의주관)
- 2010년 2월~3월: 관련 연구 검토, NPO 분류기준 마련
- 2010년 4월중: 2009년 자료를 중심으로 1차 분석 및 NPO실무자와 공유
- 2010년 4월말~5월초: 정부에 정보공개 2차 청구 및 보완 (한국NPO공동회의 주관)
- 2010년 5월중: 자료 코딩 및 NPO 유형분류, 활동 유형분류, 교차확인
- 2010년 5월중: 기술통계 분석, 추이 분석 및 기술

### 5) 연구상 한계 및 고려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의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를 테면 부처에 따라 일상적인 경상보조를 포함하지 않고 특별 프로그램이나 공모에 의한 지원만을 한정하여 통보한 부처도 일부 있었다. 부처에 따른 특별 공모 등으로 한정하여 통보한 경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포함시킨 부처보다 과소 보고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속성이 다소 상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기준에서 비교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 부처별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료가 취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처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정도를 비교하여 대략적 현황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검토한 것이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총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도 NPO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을 이양한 후에 지방정부 재정으로 전환되어 집행된다. 혹은 원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비영리민간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의 규모와 지원액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원 현황을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금번 백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2.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본 연구에 포함된 정부부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23개 중앙부처이다. 해당되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이다. 이들 부처 중에서 2010년 정부부처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본 백서에서는 2009년 지원에 대한 검토이므로 이전 부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904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상 한계에서 밝혔듯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제외하고 특별 사업공모 중심으로 보고한 부처도 있을 것이라는 점,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이양한 후에 이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의 지원이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과소보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예결산 정보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에 의하면, 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48조 3,368억 원 정도에 이르고, 일반회계만으로는 196조 9,936억 원 정도에 이른다. 정부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해보면 정부예산의 0.00016%밖에 되지 않는다.

각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빈도와 금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의 평균은 43.8개 단체였다. 하지만 빈도에 있어서 법무부, 산림청처럼 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부, 외교통상부, 농림식품수산부와 같이 많게는 100개 단체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69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1억 8,700만 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며,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1,143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부처별 지원의 편차가 커서 중앙값으로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 8,8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 또한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단체와 수백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균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의 연구의 한계와 고려사항에서도 밝혔듯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포함시킨 부처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이나 ‘민간 위탁사업’의 일부만 포함시킨 부처도 있으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농림식품수산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가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위 5개 부처로 나타났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빈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문화재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비교해보면 농림식품수산부를 제외하고는 지원빈도와 지원액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원액이 큰 경우에 특정 민간단체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다는 것을 판단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경우 창업진흥회에서 860억 원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중소기업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97% 정도나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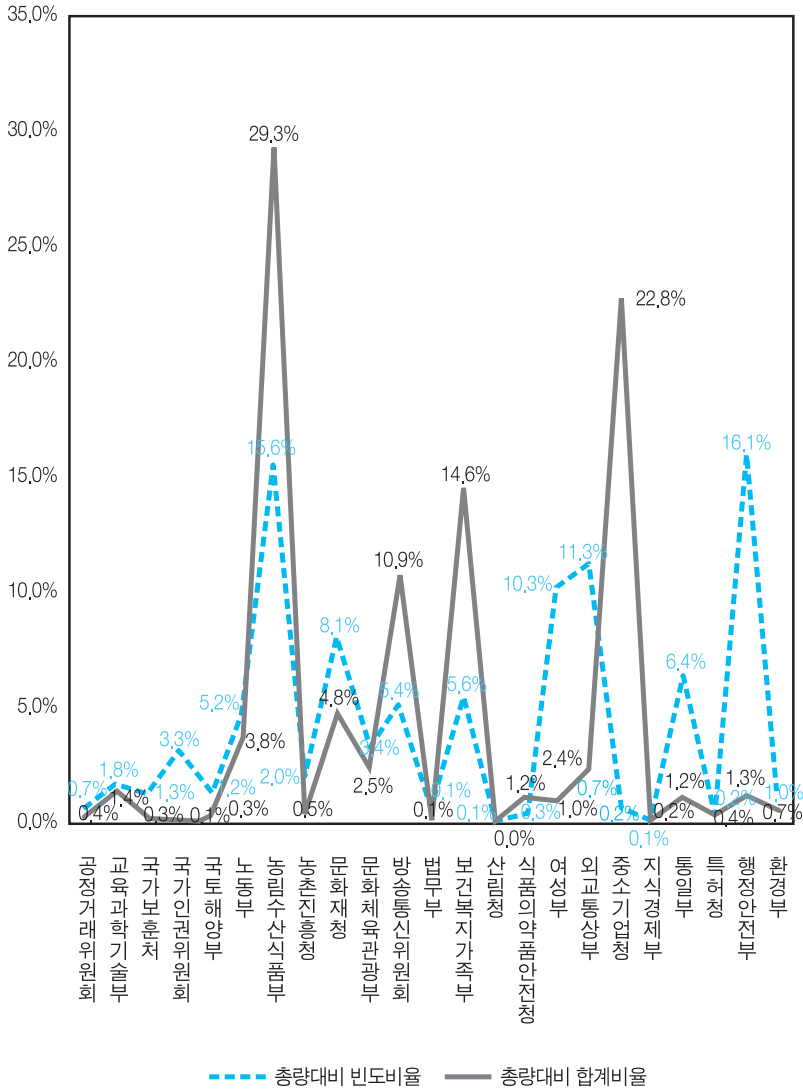
〈표 II-1〉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교 (2009년)

(단위: 천원)

부처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공정거래위원회	7	1,452,000	0.4%	207,429	364,550
교육과학기술부	18	5,446,300	1.4%	302,572	568,385
국가보훈처	13	1,119,000	0.3%	86,077	127,877
국가인권위원회	33	275,000	0.1%	8,333	1,471
국토해양부	12	1,193,000	0.3%	99,417	224,513
노동부	52	15,022,333	3.8%	288,891	821,202
농림수산식품부	157	114,352,300	29.3%	728,359	3,595,636
농촌진흥청	20	1,844,000	0.5%	92,200	59,269
문화재청	82	18,867,000	4.8%	230,085	1,085,391
문화체육관광부	34	9,599,563	2.5%	282,340	605,653
방송통신위원회	54	42,406,830	10.9%	785,312	3,379,596
법무부	1	450,000	0.1%	450,000	.
보건복지가족부	56	57,097,004	14.6%	1,019,589	3,366,365
산림청	1	187,000	0.0%	187,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3	4,540,000	1.2%	1,513,333	1,419,078
여성부	104	4,026,000	1.0%	38,712	148,272
외교통상부	114	9,304,064	2.4%	81,615	232,951
중소기업청	7	88,850,000	22.8%	12,692,857	11,790,938
지식경제부	1	900,000	0.2%	900,000	.
통일부	65	4,516,000	1.2%	69,477	395,327
특허청	2	1,537,000	0.4%	768,500	1,058,539
행정안전부	162	4,900,000	1.3%	30,247	15,549
환경부	10	2,550,000	0.7%	255,000	346,332
합계	1,008	390,434,394	100.0%	387,336	2,322,024

반대되는 극단으로 지원빈도가 높지만 지원액이 적은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49억 원의 예산을 162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나누어 주는 형태로 사업지원을 했는데, 개별 기관당 평균 3천만 원 내외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외교통상

〈그림 II-1〉 정부부처별 지원 총량 대비 지원빈도, 지원액 비율 비교 (2009년)



부의 경우에도 평균지원액이 여타의 다른 부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지원액을 보이는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모사업인데, 평균지원액이 833만 원 내외로 나타났다.

### 3.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활용하였는데, 각 유형별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빈도와 금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유형도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의 범주를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이 NPO를 분류할 때,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된 체계여서 프로그램 유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공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유형화를 할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과 지원 프로그램을 교차하여 분석할 때 유의미가 있다. 즉, 각 개별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과 사명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인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단체의 사명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까지도 떠맡게 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지원빈도가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단체(142건), 사회서비스(134건), 시민사회단체(133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기업·직업단체·노조(116건, 농수산물산업 직능단체, 전문직 연합, 노조에 대한 지원사업), 국제적 행동단체(1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 순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600억 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41.1%나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업 중 860억 원(50%)이 창업진흥원에 배분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사회·지역개발 등에도 883억 원 이상(전체 지원액의 22.6%)가 지원되는데, 이들 지원 중 절반 정도는 낙농진흥회에 원유수급조절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426억 원 이상이 지원된다. 이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므로 농림·수산·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범주화한 '경제·지역·사회개발'로 분류가 되었다. 하지만 '소득보조 및 유지' 명목으로 분류되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문화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15.4%나 지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139억 원 내외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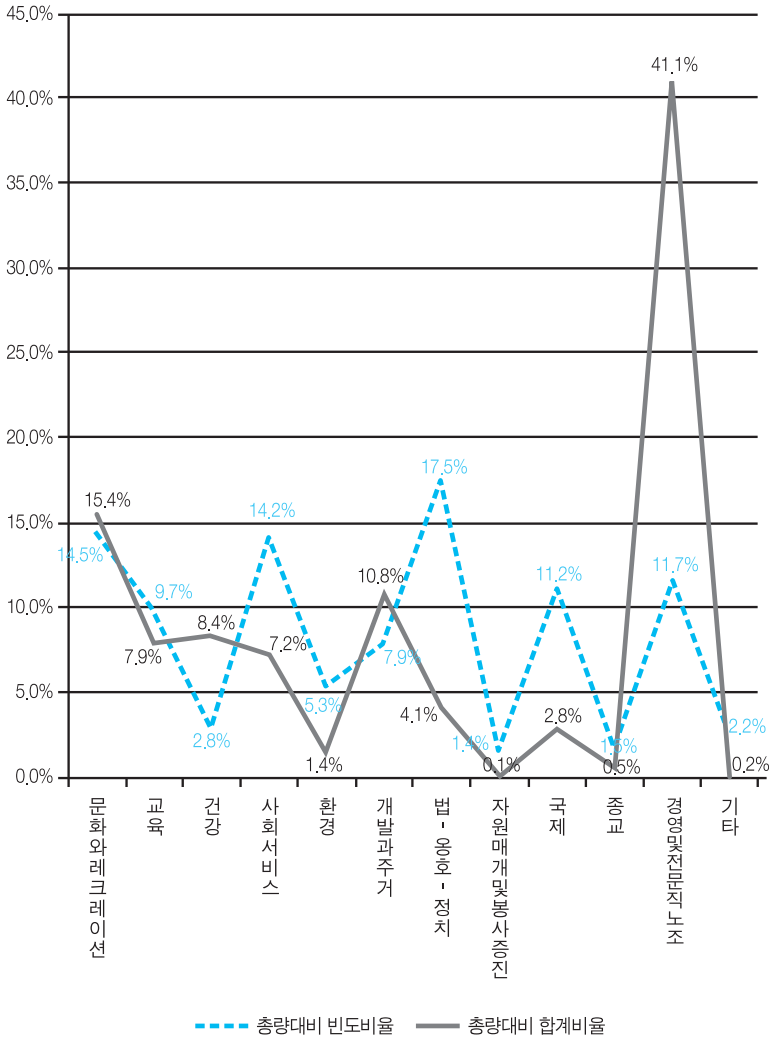
〈표 Ⅱ-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42	60,159,284	15.4%	423,657	2,242,523
레크리에이션	4	99,563	0.0%	24,891	5,591
초중등교육	12	326,660	0.1%	27,222	17,469
고등교육	30	901,998	0.2%	30,067	35,315
기타 교육	9	823,440	0.2%	91,493	218,069
연구	47	28,956,043	7.4%	616,086	2,446,342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4	2,055,000	0.5%	513,750	542,177
기타 건강서비스	24	30,602,285	7.8%	1,275,095	3,956,658
사회서비스	134	21,523,197	5.5%	160,621	805,232
긴급상황과 난민	8	1,538,500	0.4%	192,313	412,746
소득보조와 유지	1	5,000,000	1.3%	5,000,000	.
환경	49	3,696,055	0.9%	75,430	153,679
동물	4	1,810,000	0.5%	452,500	472,789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60	39,905,200	10.2%	665,087	1,607,365
주택	6	566,000	0.1%	94,333	65,509
고용 및 훈련	14	1,782,473	0.5%	127,320	229,405
시민 및 옹호단체	133	9,165,322	2.3%	68,912	156,390
법과 법률서비스	37	6,576,316	1.7%	177,738	533,514
정치조직	7	120,000	0.0%	17,143	7,244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4	561,000	0.1%	40,071	22,242
국제적 행동	113	10,899,965	2.8%	96,460	253,687
종교집회 및 단체	16	2,122,000	0.5%	132,625	294,854
기업·직업단체·노조	118	160,469,718	41.1%	1,359,913	5,553,913
기타(북한관련)	22	774,375	0.2%	35,199	64,316
합계	1,008	390,434,394	100.0%	387,336	2,322,024

려되어야 한다. 연구단체의 경우에도 연간 240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으며, 평균지원액이 1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과 재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일 단체에 한정하여 183억 원 이상의 고액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그림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 (2009년)



가 적십자 병원운영을 위해 적십자사에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비중이 높은 특정 단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분야별 지원액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개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대표하는 중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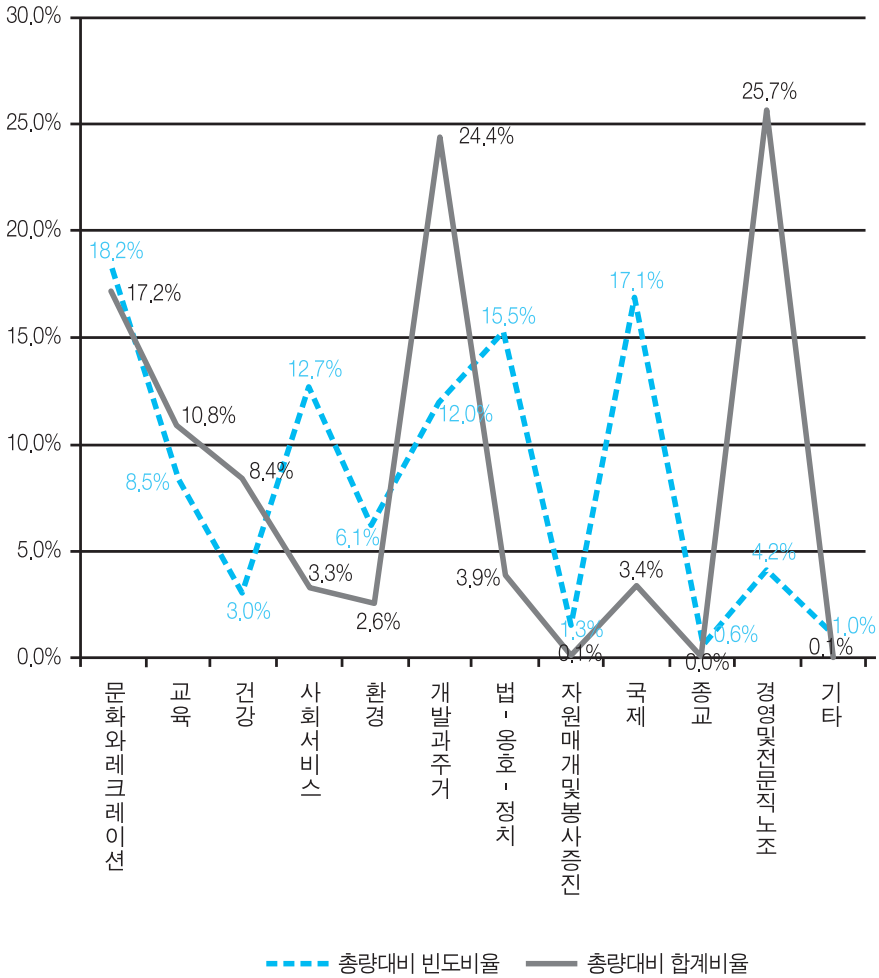
〈표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37	64,864,799	16.6%	473,466	2,284,364
레크리에이션	46	2,282,563	0.6%	49,621	57,910
초중등교육	18	5,870,016	1.5%	326,112	1,169,069
고등교육	3	8,471,570	2.2%	2,823,857	4,863,731
기타 교육	43	3,848,000	1.0%	89,488	179,658
연구	22	24,075,725	6.2%	1,094,351	3,522,597
병원과재활	1	18,310,000	4.7%	18,310,000	.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8	2,165,505	0.6%	270,688	439,953
기타 건강서비스	21	12,211,375	3.1%	581,494	1,684,165
사회서비스	120	11,622,016	3.0%	96,850	361,439
긴급상황과 난민	6	1,290,500	0.3%	215,083	483,537
소득보조와 유지	2	50,000	0.0%	25,000	21,213
환경	56	8,067,000	2.1%	144,054	457,751
동물	5	1,930,000	0.5%	386,000	435,613
경제·사회·지역개발	59	88,370,000	22.6%	1,497,797	5,687,001
주택	2	267,000	0.1%	133,500	122,329
고용 및 훈련	60	6,740,405	1.7%	112,340	273,362
시민 및 옹호단체	77	4,875,100	1.2%	63,313	92,888
법과 법률서비스	74	10,332,130	2.6%	139,623	414,555
정치조직	5	73,000	0.0%	14,600	2,302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3	402,435	0.1%	30,957	26,551
국제적 행동	172	13,395,794	3.4%	77,883	208,259
종교집회 및 단체	6	130,000	0.0%	21,667	7,528
기업·직업단체·노조	42	100,283,461	25.7%	2,387,701	6,524,531
기타(북한관련)	10	506,000	0.1%	50,600	93,281
합계	1,008	390,434,394	100.0%	387,336	2,322,024

로 중위값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직업단체·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평균지원액은 23억 8,770만 원 정도였으나 지원액의 중위값은 5,180만 원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사회·지역개발단체에 대한 평균지원액은 14억 9,780만 원 정도였으나 지

〈그림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 (2009년)



원액 중위값은 1억 9,500만 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와 예술단체의 경우 평균 지원액이 4억 7,347만 원 정도였으나 지원액 중위값은 2,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 분야는 소득보조와 유지 분야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훈제도 등 공적 영역의 국가 복지정책이 이 분야

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자체 사업을 통해 후원 연계를 하는 등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조직에 대한 지원의 정도도 적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고 유권자의 권리,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만 포함되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밖에 자선 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 양성교육 등 제한적인 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는 각 지방정부별로 ‘자원봉사센터’ 등을 두어 집행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종교집회 및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종교 본연의 활동을 위한 지원의 경우 개별 종교단체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연합회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포함이 되었다. 긴급상황과 난민에 대한 지원은 각종 안전 구호단체를 중심으로 소재지원이 되었으며, 북한과 관련한 단체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구호에 대한 지원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탈북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회서비스 등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에 대한 보호는 문화재청에 의한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보호, 밀렵 감시, 동물 의약품 개발과 관리 영역에 소재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의 경우 일부 레크리에이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 간 교류에 의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액은 총 18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 사립대학 등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각 부처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상), 학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지원사업, 국제개발과 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소수의 사업만 포함되어 있다.



# Ⅲ.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 6개 비영리민간단체에 14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이는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724억 원의 2% 정도를 차지한다. 공정

〈표 III-1〉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1	25,000	1.7%	25,000	.
법과 법률서비스	5	1,399,000	96.3%	279,800	420,035
기업·직업단체·노조	1	28,000	1.9%	28,000	.
합계	7	1,452,000	100.0%	207,429	364,550

〈표 III-2〉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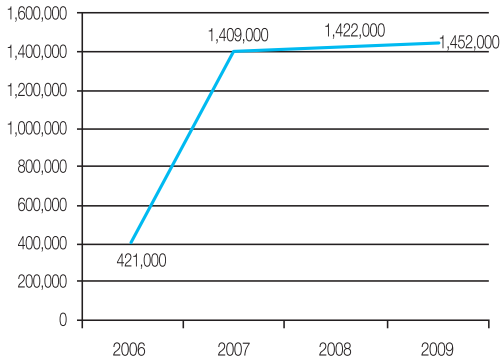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법과 법률서비스	7	1,452,000	100.0%	207,429	364,550
합계	7	1,452,000	100.0%	207,429	364,550

〈표 III-3〉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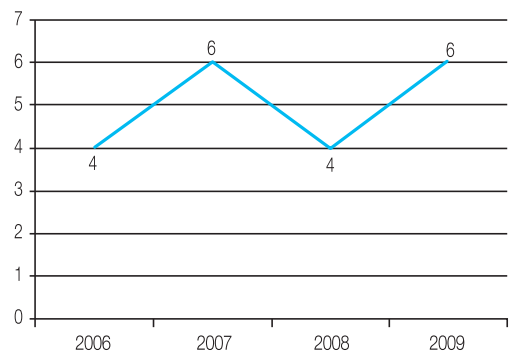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4	6	4	6
지원총액	421,000	1,408,000	1,422,000	1,452,000
전년 대비 증감		-24.4%	42.7%	13.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법과 법률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소비자보호단체, 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주를 이룬다. 환경단체에 분류가 된 단체도 ‘녹색소비자연대’로 환경친화적 소비자단체라 할 수 있다. 주로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소비자권의 옹호를 위한 소비자 활동, 각종 거래에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활동, 상품비교정보생산사업 등이다.

〈표 III-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환경	녹색소비자연대
시민 및 옹호단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산하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2억 9천만 원 정도의 소액을 지원하였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시점은 2007년으로 약 10억 원 가까이 상승하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 상담, 소비자 생활실태조사, 소비자 교육사업 등에 대해 보조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는 〈표 III-3〉과 같다.

##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차관 2명이 각각 교육 분야(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과학/학술 분야(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국제협력국, 원자력국)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54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였다. 이 부처 전체 예산이 38조 4163억여 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0.1%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물론 비영리조직에

〈표 III-5〉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600,000	11.0%	600,000	.
연구	9	3,563,500	65.4%	395,944	778,536
시민 및 옹호단체	1	28,000	0.5%	28,000	.
국제적행동	6	1,024,800	18.8%	170,800	241,382
기업·직업단체·노조	1	230,000	4.2%	230,000	.
합계	18	5,446,300	100.0%	302,572	568,385

〈표 III-6〉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4	1,697,000	31.2%	424,250	149,507
연구	2	2,443,000	44.9%	1,221,500	1,687,864
국제적 행동	11	1,076,300	19.8%	97,845	190,186
기업·직업단체·노조	1	230,000	4.2%	230,000	.
합계	18	5,446,300	100.0%	302,572	568,385

해당되는 각급 사립학교,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이 부처의 지원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되지만 이를 제외한 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에 응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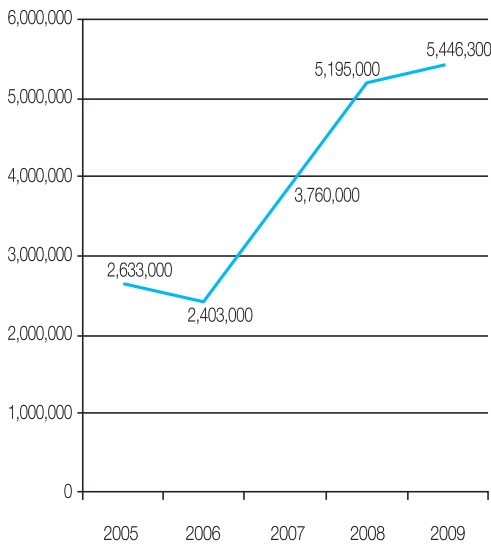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로 연구, 국제교류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아태이론물리센터'로 24억 원(2009년 지원예산의 44.4%)의 지원을 받았다. 그 밖에 다양한 기관이 나머지 30억 원 정도를 나누어 지원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단체와 그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전 분야의 연구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고전문헌을 국역'하거나, 국내외 문화원, 국제교류단체를 통하여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교원단체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한국교육삼락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표 III-7〉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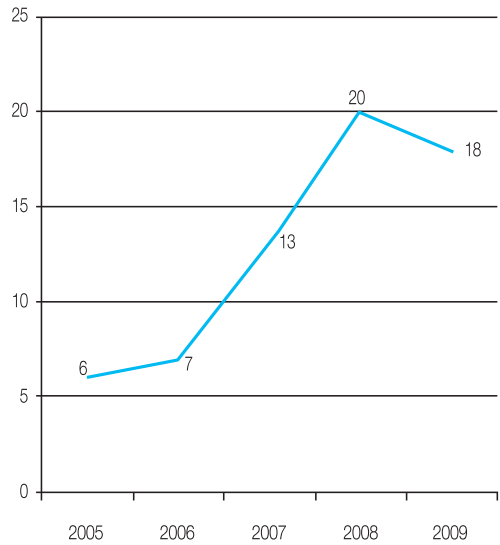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6	7	13	20	18
지원총액	2,633,000	2,403,000	3,760,000	5,195,000	5,446,300
전년 대비 증감	-	-8.7%	56.5%	38.2%	4.8%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2007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고전문헌 국역지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8년에도 예산이 급증하는데, 이 때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확대되고, '아태이론 물리센터'에 대한 예산보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8〉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	Korea Academy For Educators Republik Center of Education 민족문제연구소 밀라노한이문화연구원 상고사학회 아태이론물리센터 재아르헨티나이민문화연구원 전통문화연구회 한베언어문화연구소
시민 및 옹호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제적 행동	The Korea Society 대련외국어학원부설한국문화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한국교육삼락회

### 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부서이다. 아울러 독립, 호국, 민주화 관련 기념 및 추모행사를 통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이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가안보를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국가보훈처는 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였다. 이 부처 전체 예산이 31조 8,886억 여 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0.1%도 되지 않는다. 이 부처는 주로 보훈보상, 보훈복지, 보훈행정에 30조 원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인 455억 원 내외가 보훈선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주로 보훈선양과 관련한 기념사업회에 집행된다고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의 2.4% 정도 내외만이 비

〈표 III-9〉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3	1,119,000	100.0%	86,077	127,877
합계	13	1,119,000	100.0%	86,077	127,877

〈표 III-10〉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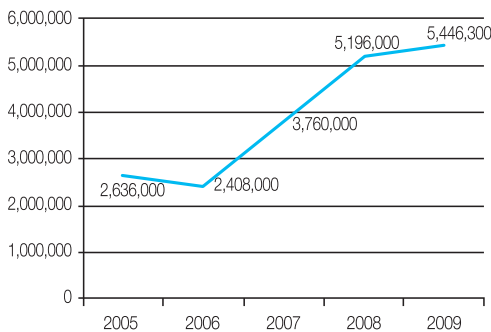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1	1,069,000	95.5%	97,182	136,735
국제적 행동	2	50,000	4.5%	25,000	21,213
합계	13	1,119,000	100.0%	86,077	127,877

〈표 III-11〉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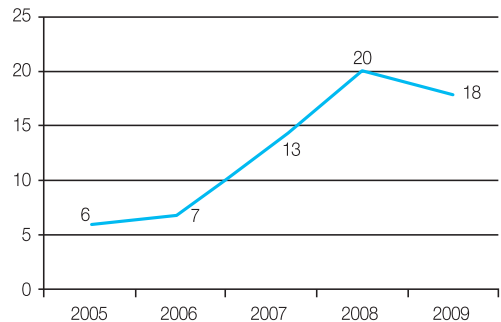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5	7	6	6	8
지원총액	67,000	82,000	242,000	112,500	1,119,000
전년 대비 증감	-	22.4%	195.1%	-53.5%	894.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12〉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숭모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허버트박사기념사업회

영리민간단체를 통하여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사업회나 숭모회’ 등이다. 지원액은 주로 이들 단체가 주관하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식, 기념식, 관련 문화행사,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에 지원된다.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예산은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2007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보조가 상당히 늘었고, ‘헤이그 특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에는 전년 예산의 9배 가량이 증액되는데, ‘류관순 열사 순화공연’에 따른 예산 편성, ‘김구 선생 서거 60주년 기념식’,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사업’,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지원의 증액에 기인한다.

#### 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1년 설립된 국가의 인권현안을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조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외 인

〈표 III-1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8,018	2.9%	8,018	.
기타 건강서비스	2	18,285	6.6%	9,143	329
사회서비스	9	79,938	29.1%	8,882	1,310
긴급상황과 난민	1	7,500	2.7%	7,500	.
시민 및 옹호단체	17	134,941	49.1%	7,938	1,689
국제적 행동	1	9,225	3.4%	9,225	.
기업·직업단체·노조	1	7,718	2.8%	7,718	.
기타(북한관련)	1	9,375	3.4%	9,375	.
합계	33	275,000	100.0%	8,333	1,471

〈표 III-14〉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8,018	2.9%	8,018	.
초중등교육	1	9,356	3.4%	9,356	.
연구	5	44,505	16.2%	8,901	584
기타 건강서비스	1	9,375	3.4%	9,375	.
사회서비스	2	18,382	6.7%	9,191	228
긴급상황과 난민	1	7,500	2.7%	7,500	.
시민 및 옹호단체	21	172,464	62.7%	8,213	1,626
법과 법률서비스	1	5,400	2.0%	5,400	.
합계	33	275,000	100.0%	8,333	1,471

권단체와 협력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사업안을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처 전체 예산이 23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1.2%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

〈표 III-15〉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3~2009년)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2006~2009	2010
시민실천 프로그램	125,000	125,000	125,000	-	
인권단체 협력사업	200,000	150,000	150,000	275,000	130,000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대상 단체수	자료 미확보	자료 미확보	20개 단체	매년 29~33개 단체	15개 단체 확정

〈표 III-16〉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마포공동체라디오
기타 건강서비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회서비스	간디문화센터 느티나무마을 새움터 울산YWCA·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자생활시설씨밀레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실로암사람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긴급상황 및 난민	피난처
시민 및 옹호단체	나눔과미래 대전충청이주민운동연대(9개단체) 부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 부산가톨릭공부방협의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대전여민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장애인부모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시설생활인권연대 제주장애인권포럼 춘천여성민우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적 행동	지구촌동포청년연대
기타(북한관련)	NK지식인연대

해 지원받은 기관의 절반 정도는 주로 인권, 민주화, 여성단체 등 ‘시민 및 옹호단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성폭력상담소, 문화센터 등 ‘사회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29% 정도 되었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인권에 대한 옹호, 대변,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단체에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검토해볼 때, 62% 정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16% 정도가 인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지원되었다. 지원을 받는 단체의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소규모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단체가 소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평균 지원금액이 833만 원 내외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만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예산은 ‘시민실천 프로그램’과 ‘인권단체협력사업’이 통합된 2005년 이래 2억 7,500만 원으로 동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검토해보면, 2010년에는 이 예산이 감액되어 1억 3천만 원을 15개 기관에 지원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국토·해양공간을 기획·관리하여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획과 사업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이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주택 토지, 건설 및 수자원, 국토 개발과 관련한 사무를, 제2차관을 중심으로 교통, 물류, 항공, 해양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는 11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억 9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였다. 일반회계계정 예산과 도로, 철도, 항만, 국가균형발전 등을 처리하는 특별회계계정 예산을 포함하여 이 부서의 예산이 35조 3,107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공공안전법과법률서비스)에 7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은 주로 해양환경단체나 해양구조단체에 해양환경 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Ⅲ-17〉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25,000	2.1%	25,000	.
긴급상황과 난민	2	220,000	18.4%	110,000	127,279
환경	8	155,000	13.0%	19,375	5,290
시민 및 옹호단체	1	793,000	66.5%	793,000	.
합계	12	1,193,000	100.0%	99,417	224,513

〈표 Ⅲ-18〉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11	400,000	33.5%	36,364	54,478
법과 법률서비스	1	793,000	66.5%	793,000	.
합계	12	1,193,000	100.0%	99,417	224,513

〈표 Ⅲ-19〉 국토해양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긴급상황과 난민	한국해양구조단
환경	무지개세상 생태지평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해병이바다살리기운동본부
시민 및 옹호단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수중환경연합회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1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원액의 변동은 3.7% 정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6. 노동부

노동부는 1963년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 인력개발을 위하여 노동청으로 발족한 이래,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안정, 고용평등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획조정실 이외에 노동시장, 직업능력, 인력수급, 고용평등 등과 관련한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정책실과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공공노사업무를 관장하는 노사정책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9년 노동부는 5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50억 2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1조 1,3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1.3% 정도 된다.

2009년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장 학문화재단’을 통하여 연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표 III-20〉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3	113,842	0.8%	37,947	18,397
연구	5	651,113	4.3%	130,223	172,785
사회서비스	2	1,388,512	9.2%	694,256	901,488
소득보조와 유지	1	5,000,000	33.3%	5,000,000	.
환경	1	46,055	0.3%	46,055	.
고용 및 훈련	3	1,332,420	8.9%	444,140	348,078
시민 및 옹호단체	8	156,655	1.0%	19,582	4,332
법과 법률서비스	2	21,086	0.1%	10,543	14,882
국제적 행동	1	940,700	6.3%	940,700	.
종교집회 및 단체	2	1,769,100	11.8%	884,550	79,408
기업·직업단체·노조	24	3,602,850	24.0%	150,119	586,447
합계	52	15,022,333	100.0%	288,891	821,202

〈표 III-21〉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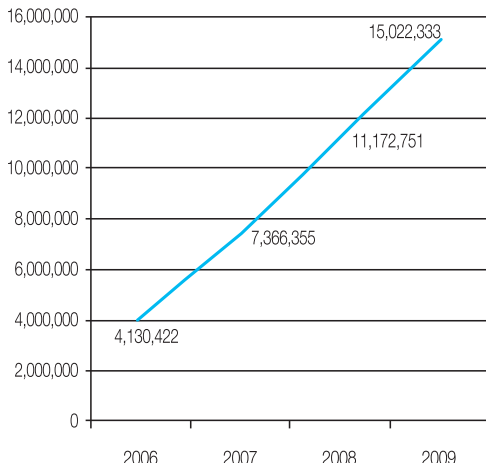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초중등교육	1	5,000,000	33.3%	5,000,000	.
연구	3	605,220	4.0%	201,740	200,012
고용 및 훈련	28	5,952,452	39.6%	212,588	376,019
기업·직업단체·노조	20	3,464,661	23.1%	173,233	642,674
합계	52	15,022,333	100.0%	288,891	821,202

〈표 III-22〉 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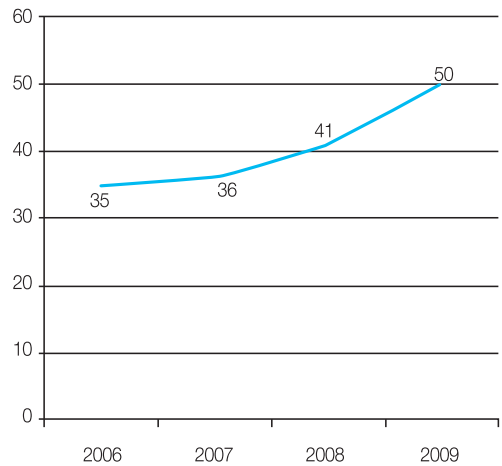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35	36	41	50
지원총액	4,130,422	7,366,358	11,172,751	15,022,333
전년 대비 증감	-	78.3%	51.7%	34.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액의 1/3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기업·직업단체·노조의 범주에 속하는 노동단체 24곳에 연간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표 III-23〉 노동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문화진흥회	전통문화사랑모임
연구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노사문제연구원 한국지역고용학회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사회서비스	지구촌사랑나눔	틱옴복지재단
소득보조와 유지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환경	생명의숲국민운동	
고용 및 훈련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인재뱅크
시민 및 옹호단체	대구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부산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제적 행동	한국국제노동재단	
종교집회 및 단체	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통도사자비원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노사문제협의회 미래노사발전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한국조정중재협회 항만예인선노동조합	노사공포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일진전기반월공장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액의 24% 수준이다. 그 밖에는 불교 및 기독교 단체, 한국국제노동재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지원에 27억 원 내외(18%)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 목적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통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노동단체운동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구에, 기타 단체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고용평등을 위한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노동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41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78.3%나 급증하여 73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기금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지원한 것,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인상된 상황을 반영한다. 2008년도에도 2007년도보다 51.7%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제반 분야의 점증적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4.5%나 증액되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제도가 생긴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7. 농림식품수산부

농림식품수산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농림부에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되었다. 이 부처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1차관은 기획과 정책을 총괄하고 제2차관은 농수산 식품 등 생산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식품수산부의 주요한 임무는 농림, 수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 농림식품수산부는 111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143억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보낸 자료에서 정부산하기관, 일반 기업을 제외하여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정도 규모의 지원액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수의 29.3%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이다. 이 부처는 15조 5,694억 원 내외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0.7% 정도 된다.

2009년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전체 지원예산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572억 원

〈표 III-24〉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9	475,000	0,4%	52,778	32,511
레크리에이션	1	25,000	0,0%	25,000	.
초중등교육	1	30,000	0,0%	30,000	.
고등교육	6	227,900	0,2%	37,983	44,880
기타 교육	1	672,000	0,6%	672,000	.
연구	10	4,822,000	4,2%	482,200	735,002
사회서비스	3	10,449,000	9,1%	3,483,000	4,363,981
환경	9	322,000	0,3%	35,778	23,059
동물	1	500,000	0,4%	500,000	.
경제·사회·지역개발	40	38,472,200	33,6%	961,805	1,906,824
시민 및 옹호단체	11	570,500	0,5%	51,864	58,175
법과 법률서비스	6	191,700	0,2%	31,950	30,056
국제적 행동	1	272,000	0,2%	272,000	.
종교집회 및 단체	2	94,400	0,1%	47,200	53,457
기업·직업단체·노조	56	57,228,600	50,0%	1,021,939	5,689,327
합계	157	114,352,300	100,0%	728,359	3,595,636

내외를 농어민, 축산인 단체에 할당하고 있었다. 특히 낙농진흥회에 원유수급조절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426억 5천만 원(전체 농림식품수산부 지원액의 37.2%)를 할당하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단체와 이들의 자조단체에 자조금 형태로 385억 원 정도(33.6%)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 밖에 '농촌희망재단'에 102억 원 이상(8.7%)을 지원하여 농촌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농촌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 분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원빈도와 지원액으로 나타난 분야가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영역이며, 그 금액은 877억 원 정도로 전체 지원액의 76.4%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속하는 활동으로 각종 자조금, 생산품 출하시기 조절, 농수산물유통체계 유통체계를 비롯한 상거래 지원, 농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

〈표 III-25〉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	100,600	0.1%	50,300	70,286
레크리에이션	41	2,025,000	1.8%	49,390	61,064
초중등교육	4	550,000	0.5%	137,500	143,614
고등교육	1	8,440,000	7.4%	8,440,000	.
기타 교육	17	3,296,000	2.9%	193,882	252,305
연구	4	2,434,000	2.1%	608,500	477,252
사회서비스	1	1,789,000	1.6%	1,789,000	.
환경	3	4,266,000	3.7%	1,422,000	1,609,426
동물	1	500,000	0.4%	500,000	.
경제·사회·지역개발	47	87,695,000	76.7%	1,865,851	6,332,285
주택	1	220,000	0.2%	220,000	.
시민 및 옹호단체	1	188,000	0.2%	188,000	.
법과 법률서비스	26	2,065,900	1.8%	79,458	242,398
국제적 행동	3	354,000	0.3%	118,000	133,368
기업·직업단체·노조	5	428,800	0.4%	85,760	104,714
합계	157	114,352,300	100.0%	728,359	3,595,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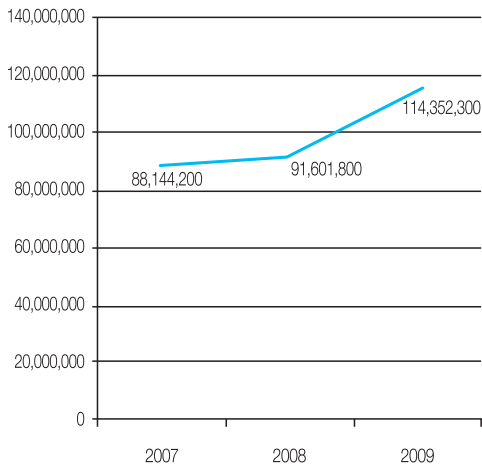
한 제반 홍보노력 등이 포함된다. 지원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프로그램은 도농교류, 도농연대교육 등 체험식 선농(先農)행사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지원빈도에 비해 지원액은 20억 정도(1.8%)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등교육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앞에서 논의한 농촌출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8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 수산자원관리, 어항청소 등의 사업에 42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에 33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비율로 집행이 되었다. 종합하자면,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농어민, 축산인 당사자의 생계와 소득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III-26〉 농림식품수산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7~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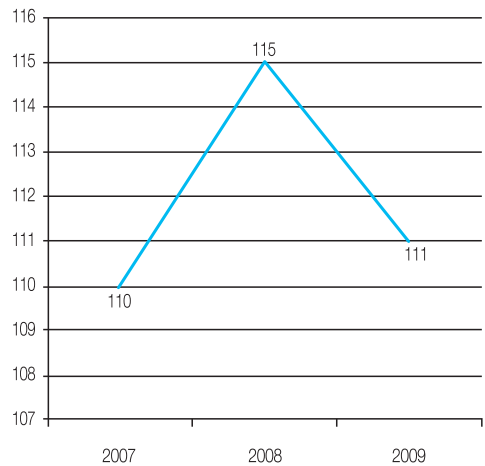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110	115	111
지원총액	88,144,200	91,601,800	114,352,300
전년 대비 증감		3.9%	24.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23억 원 정도 즉 24.8%나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비롯한 선농증진 사업, 농어업 농어촌 가치 소비촉진 홍보, 농축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장된 결과이다. 이 시기에 낙농진흥비, 각종 자조금 기금, 축산농가 생산량 조절 등 농어촌 지역의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7〉 농림식품수산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국악방송 대산농촌문화재단 서울신문사	남원문화원 두들쟁이타래 슬로푸드문화원 전통우리음식진흥회	농어민신문사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전통문화사랑모임
초등교육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고등교육	강원대학교 중부대학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경대학교
기타 교육	한국해양수산신식인연합회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중자연구회	농정연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축육개발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회서비스	다솜동지복지재단		
소득보조와 유지	농촌희망재단		
환경	녹색누리 미래가족문화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생명의숲국민운동 한국환경청소년연맹	돌나라한농복구회 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동물	한국동물약품협회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광주전남행복발전연구소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생활개선중앙회 양륙자조금위원회 육계및산란계자조금위원회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한국수산회	낙농자조금위원회 농촌정보문화센터 수협중앙회 양봉협회 재단법인지역재단 한국4-H본부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농림수산정보센터 새마을운동중앙회 양돈자조금위원회 오리지자조금위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우자조금위원회
시민 및 변호단체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한국부인회	농기주부모임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한국주부클럽연합회	농기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법과 법률서비스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국제적 행동	FAO한국협회		
종교집회 및 단체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김생산어민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자녀연합회김해시지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마음유기농영농조합	낙농진흥회 전국버섯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CEO연합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송어양식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장흥군연합회 한국쌀전업농연합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자라생산자협회 한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광어양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선협회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전북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중앙부서이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직은 기획조정관 이외에,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부설로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8억 4천만 원 정도로 3개의 비

〈표 III-28〉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경제·사회·지역개발	14	1,260,000	68.3%	90,000	61,490
기업·직업단체·노조	6	584,000	31.7%	97,333	58,929
합계	20	1,844,000	100.0%	92,200	59,269

〈표 III-29〉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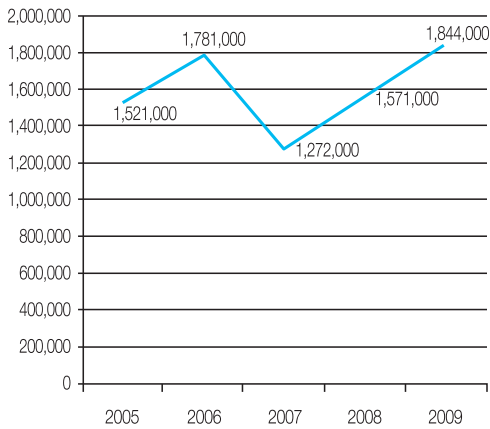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120,000	6.5%	120,000	.
레크리에이션	3	200,000	10.8%	66,667	2,887
기타 교육	5	338,000	18.3%	67,600	65,409
연구	2	197,000	10.7%	98,500	75,660
사회서비스	1	217,000	11.8%	217,000	.
경제·사회·지역개발	6	513,000	27.8%	85,500	61,656
국제적 행동	1	144,000	7.8%	144,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115,000	6.2%	115,000	.
합계	20	1,844,000	100.0%	92,200	59,269

〈표 III-30〉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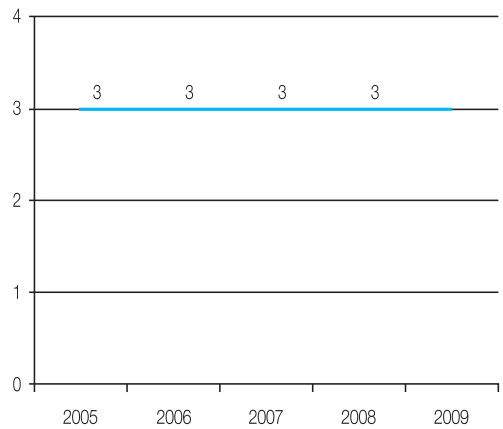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3	3	3	3	3
지원총액	1,521,000	1,781,000	1,272,000	1,571,000	1,844,000
전년 대비 증감	-	17.1%	-28.6%	23.5%	17.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농촌진흥청은 6,22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3%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주로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9년에는 한국4H본부에 10억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5억 8천여만 원, 생활개선중앙회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 한국 4H본부, 생활개선중앙회는 농촌사회개발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제·사회·지역개발 범주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직업단체의 속성을 고려하여 기업·직업·노조에 분류하여 넣었다. 그 단체의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농어민 신문 발간의 경우 언론/대중매체의 속성을 지녔으므로 문화와 예술활동에, 도농교

〈표 III-31〉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경제·사회·지역사회 개발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본부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류와 연대교육은 레크리에이션에, 농민교육·선진농장연수 등은 기타 교육에, 생활개선중앙회의 과제분과연구비와 한국4-H본부의 농촌문화연구는 연구 활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기타 농촌청소년의 생활기술정보지 발간은 청소년서비스의 속성 때문에 사회서비스로, 4H국제교류참가는 국제적 행동으로 구분해 넣을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앞에서 제시한 세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액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2005~2009년까지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7년 지원액이 28.6%나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원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지원의 형태는 한국4H본부에 대한 지원이다. 2006년, 2008년에 시설개보수 관련하여 각각 3억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한국4H본부와 관련하여 4H활동 청소년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지원액이 17.4% 인상되었는데, 한국4H본부의 예산상 변동이 작았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농촌지도자중앙협의회에 농민회관 설비 및 관리명목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생활개선중앙회에 여성비즈니스활동 지원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9.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9년 승격된 부처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

〈표 III-32〉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51	16,713,000	88.6%	327,706	1,366,115
기타 교육	1	24,000	0.1%	24,000	.
연구	11	1,557,680	8.3%	141,607	265,277
사회서비스	3	21,000	0.1%	7,000	2,646
동물	2	210,000	1.1%	105,000	86,974
경제·사회·지역개발	1	26,000	0.1%	26,000	.
고용 및 훈련	1	14,000	0.1%	14,000	.
시민 및 옹호단체	4	89,000	0.5%	22,250	5,252
국제적 행동	7	92,320	0.5%	13,189	14,999
기업·직업단체·노조	1	120,000	0.6%	120,000	.
합계	82	18,867,000	100.0%	230,085	1,085,391

〈표 III-33〉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62	16,113,000	85.4%	259,887	1,240,591
연구	2	848,000	4.5%	424,000	595,384
동물	3	330,000	1.7%	110,000	62,107
국제적 행동	15	1,576,000	8.4%	105,067	234,653
합계	82	18,867,000	100.0%	230,085	1,085,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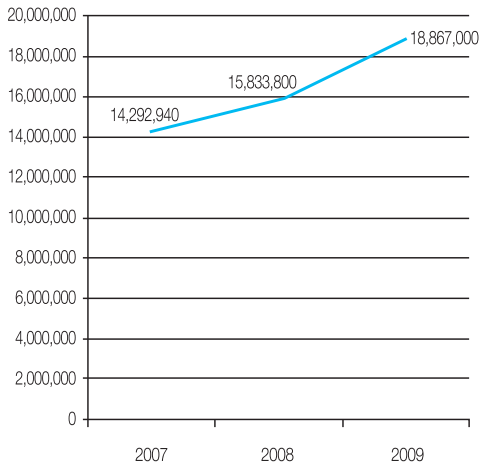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처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지정해 등록하고, 문화재의 변경과 발굴을 허가하며, 문화재를 보존·육성한다. 또한 각종 주요 유적지를 직접 관리하고,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며, 남북 문화재 교류를 모색하고, 문화재를 조사 연구한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기획조정관 이외에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으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 문화재별로 관리소를 두고 있고, 박물관과 중앙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표 III-34〉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7~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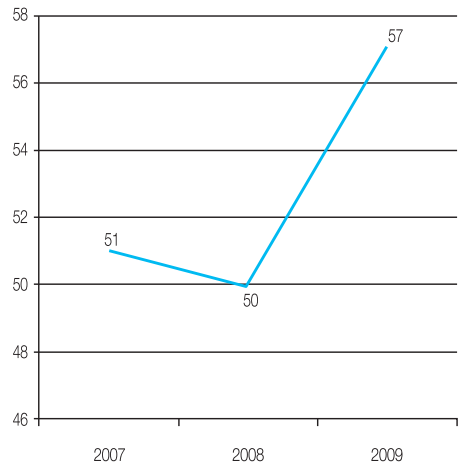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51	50	57
지원총액	14,292,940	15,833,800	18,867,000
전년 대비 증감	-	10.8%	19.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문화재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87억 3천만 원 정도로 57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문화재청이 4,21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4.4%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부처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주로 문화/역사단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는데 전체 82건의 지원 중에 51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 분야의 단체에 지원되었다. 지원액도 167억 원 정도로 전체 지원액 대비 88.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한국문화재보

호재단'에 대한 지원금이 139억 4천만 원 정도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74.4% 정도가 집중되었다.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라는 이름으로 1980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의례재현사업, 전통예술공연, 전통공예전시,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산교육, 도서출판, 전통음식관광자원화사업, 한국의집전통혼례, 전통공예상품,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문화교류, 문화재조사연구, 세시절행사(설, 정월대보름, 입춘, 단오, 추석, 동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고미술협회'가 5억 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은 천연기념물로 분류된 조류와 수달을 보호하는 단체와 '대한수의사회'에 돌아갔고, 그 밖에 다양한 단체들이 문화재 보호와 홍보 등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을 받았다.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사업'(단체당 300만 원~1,000만 원 지원),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사업'(1,000만 원~3,400만 원 지원) 등에 다양한 단체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고유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단체, 천연기념물 보호 단체, 국제문화재 등록 혹은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한 국제행동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문화재청의 정부 지원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이래 연간 10.8~18.3% 증가하면서, 2년 동안 지원액이 44억 원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 증액으로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2007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연간 지원액은 90억 8천만 원 정도였다가, 2008년에 111억 3천만 원으로 22.7% 증액되었으며, 2009년에는 140억 8천만 원으로 다시 26.5% 증액되었다. 2년새 50억 원 정도, 즉 55%나 증액되었다.

##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광래저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표 III-35〉 문화재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강릉단오제보존회	광주북구문화재지킴이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남원문화지킴이
	내셔널트러스트	대구시니어문화유산지킴이
	대동문화재단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불교문화재연구소	성남문화지킴이
	수원지기학교	신라문화원
	아름지기	안동문화지킴이
	웃칠문화연구원	익산가정사랑학교
	전주문화지킴이(시민행동2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제주문화재지킴이	조문국의성문화유산보존회
	종묘제례및제례악보존회	진주성지킴이회
	충주전통문화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의재발견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한국판소리보존회	한발문화마당	
해반문화사랑회	화성연구회	
기타 교육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연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서울문화사학회
	성보문화재연구원	여성문화유산연구원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전통문화재연구원
	한국국제사법학회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사회서비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동물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경제·사회·지역사회 개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고용 및 훈련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시민 및 옹호단체	고양시민회	목포KYC
	서울KYC	원주시민연대
국제적 행동	COMOS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회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대한수이사회	

국가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명의 차관을 두고 기획조정실을 위시하여 문화콘텐츠 사업실, 문화예술국, 관광산업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설추진단, 종무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홍보지원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

〈표 Ⅲ-36〉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3	9,293,000	96.8%	404,043	708,669
레크리에이션	1	29,563	0.3%	29,563	.
연구	1	70,000	0.7%	70,000	.
시민 및 옹호단체	1	50,000	0.5%	50,000	.
국제적 행동	1	7,000	0.1%	7,000	.
종교집회 및 단체	7	150,000	1.6%	21,429	6,901
합계	34	9,599,563	100.0%	282,340	605,653

〈표 Ⅲ-37〉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3	9,043,000	94.2%	393,174	712,246
레크리에이션	1	29,563	0.3%	29,563	.
연구	1	70,000	0.7%	70,000	.
사회서비스	1	20,000	0.2%	20,000	.
국제적 행동	1	7,000	0.1%	7,000	.
종교집회 및 단체	6	130,000	1.4%	21,667	7,528
기업·직업단체·노조	1	300,000	3.1%	300,000	.
합계	34	9,599,563	100.0%	282,340	605,653

속기관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96억 원 정도로 2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1조 6,82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5%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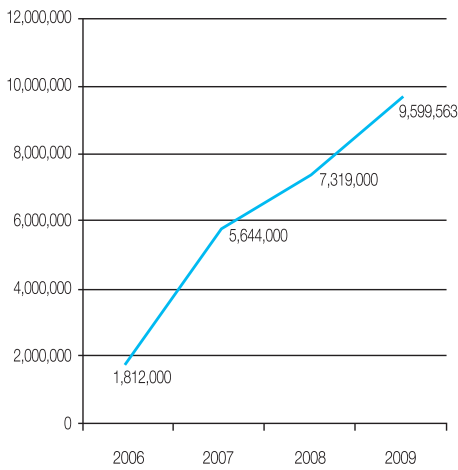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는데 전체 34건의

〈표 III-38〉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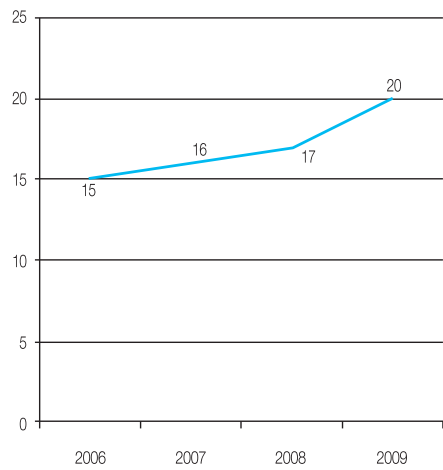
(단위: 천원)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15	16	17	20
지원총액	1,812,000	5,644,000	7,319,000	9,599,563
전년 대비 증감	-	211.5%	29.7%	3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39〉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거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성균관유도회	시민문화회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책임은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글문화연대	현정회
레크리에이션	대한치어리딩협회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시민 및 옹호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국제적 행동	한중여성교류협회	
종교집회 및 단체	대한불교청년회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지원 중에 23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 분야의 단체에 지원되었다. 지원액도 93억 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 대비 96.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문화 역사 마을 조성사업’ 대한 지원금이 27억 원으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28.1% 정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 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19억 원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향토사 연구’에 16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즉, 이들 세 기관에 전체 민간단체 지원예산의 64.8%가 집중된 것이다. 그 밖에 1억 원 이하의 소액의 지원이 다양한 범주의 단체에 지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무(宗務)업무의 일환으로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평균지원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였으나, 몇 개 기관에 집중 지원이 되면서 지원액의 중위값은 4,5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단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지원액의 규모는 매년 그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증가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2007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하여 진행된 ‘문화역사마을’ 건립에 2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면서 인상폭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매년 27억 원~30억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 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舊)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구(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표 III-40〉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1	31,142,970	73.4%	1,482,999	5,357,438
기타 교육	2	26,440	0.1%	13,220	4,554
연구	2	774,450	1.8%	387,225	513,041
사회서비스	9	321,000	0.8%	35,667	53,798
시민 및 옹호단체	8	2,122,890	5.0%	265,361	483,565
법과 법률서비스	2	38,530	0.1%	19,265	1,039
기업·직업단체·노조	10	7,980,550	18.8%	798,055	1,014,088
합계	54	42,406,830	100.0%	785,312	3,379,596

〈표 III-4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8	35,973,000	84.8%	1,998,500	5,711,463
기타 교육	19	183,000	0.4%	9,632	3,483
법과 법률서비스	13	910,830	2.1%	70,064	143,477
기업·직업단체·노조	4	5,340,000	12.6%	1,335,000	1,260,119
합계	54	42,406,830	100.0%	785,312	3,379,596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24억 원 내외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2,791억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15.2%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

〈표 III-4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DTV코리아	국제방송교류재단
	대구미디어교육연구소	독립제작사협회
	봉림	부산영상포럼
	사회문화나눔협회	서울예술단
	시민문화회의	시청자영상제작단
	울산미디어연대	장애인문화공간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청풍영상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고등교육	서울시니어아카데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연구	부산사회조사연구원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사회서비스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진안군청소년수련관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민 및 옹호단체	언론인권센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유교육연합	제주장애인권포럼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법과 법률서비스	광고소비자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체 지원으로 활용되어,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 편인데, 주로 방송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특징지워진다. 전체 54건에 대한 지원 중에서 21건이 방송 분야단체에 대한 지원이었고, 전체 예산액의 73.4%나 되는 예산이 이에 활용되었다. 이 중에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아리랑구제방송’ 지원금액이 연간 247억 원이나 되어 전체 예산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통화품질개선, 방송환경개선, 문예콘텐츠 활성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 권익 옹호, 미디어 교육지원사업 등을 위시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금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방송통

신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평균지원액은 7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 었으나, 아리랑TV 등 몇 개 기관에 집중 지원이 되면서 지원액의 중위값은 1,9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06억 원 정도로 66개 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였다. 2009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단체의 수는 대 폭 줄었으나, 지원액의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 법무부

법무부는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 검찰 사 무의 지휘·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 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법 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두고 있다. 관련한 부설 부직으로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 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국인보호소, 지방교정청장 소속 하의 교도소·구치소 및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 검찰청 등 229개 기관이 있다.

법무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억 5천만 원 정도로 소년보호협 회에 대한 자립생활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주요 목적 중에서 범법자 의 교정·교화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예산이 2조 2,451억 원 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0.1% 미만으로 매우 미약

〈표 III-43〉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법과 법률서비스	1	450,000	100.0%	450,000	.
합계	1	450,000	100.0%	450,000	.

〈표 III-44〉 법무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법과 법률서비스	소년보호협회

하다. 한편 2010년부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11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13. 보건복지가족부<sup>1</sup>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가족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부처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선진화 기획관을 두고, 기획조정실 이외에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저출산고령화정책실을 두고 있다. 정리하자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의 보건정책,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570억 원 정도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큰 지원규모를 차지한다. 2009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18조 5,025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3%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

1 현 보건복지부. 2010년부터는 청소년, 가족정책 업무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에 이루어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2009년의 부처명을 그대로 활용하며, 그 당시의 부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III-45〉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	271,454	0.5%	135,727	-
고등교육	2	271,454	0.5%	135,727	-
연구	3	17,434,000	30.5%	5,811,333	9,398,697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3	755,000	1.3%	251,667	169,730
기타 건강서비스	12	30,056,000	52.6%	2,504,667	5,425,086
사회서비스	18	4,472,407	7.8%	248,467	347,105
고용 및 훈련	1	271,053	0.5%	271,053	.
시민 및 옹호단체	12	3,252,636	5.7%	271,053	-
국제적 행동	1	200,000	0.4%	20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2	113,000	0.2%	56,500	51,619
합계	56	57,097,004	100.0%	1,019,589	3,366,365

〈표 III-46〉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3	407,181	0.7%	135,727	-
연구	3	17,434,000	30.5%	5,811,333	9,398,697
병원과 재활	1	18,310,000	32.1%	18,310,000	.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3	755,000	1.3%	251,667	169,730
기타 건강서비스	12	11,839,000	20.7%	986,583	2,176,314
사회서비스	19	4,608,134	8.1%	242,533	338,316
고용 및 훈련	1	271,053	0.5%	271,053	.
시민 및 옹호단체	12	3,252,636	5.7%	271,053	-
국제적 행동	1	200,000	0.4%	20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20,000	0.0%	20,000	.
합계	56	57,097,004	100.0%	1,019,589	3,36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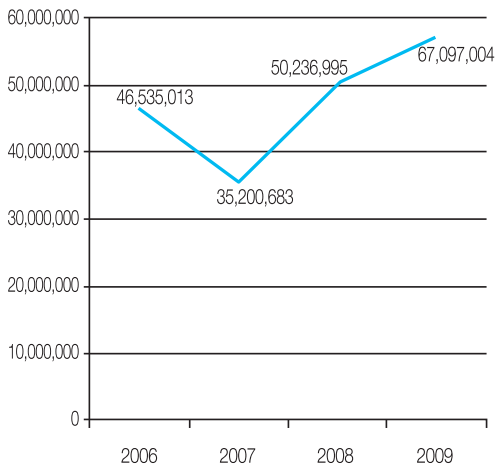
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본 자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

〈표 III-47〉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3~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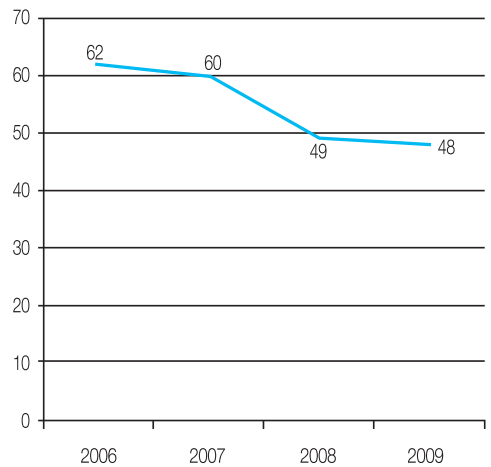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62	60	49	48
지원총액	46,535,013	35,200,683	50,236,995	57,097,004
전년 대비 증감		-24.4%	42.7%	13.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로 사회서비스 단체(18건), 시민 및 옹호단체(12건), 기타 건강서비스 단체(12건)에 대한 지원빈도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단체를 포괄하며, 시민 및 옹호단체는 노인 혹은 장애인 당사자 연합회, 각종 복지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기타 건강서비스 단체를 위한 지원은 주로 적십자사에 집중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본다면 전체 지원액의 52.6%인 300억 원 가량이 기타 건강서비스에 지원이 되었다. 이 중에서 183억 원이 적십자 병원에 대한 기

〈표 III-48〉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한국가족문화원	한국전레원	
고등교육	순천침암대학 산학협력단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기타 건강서비스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보건협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서비스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장애인복지협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고용 및 훈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시민 및 옹호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국제적 행동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산하 보건간호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능보강지원, 87억 원 정도가 적십자 혈액원, 헌혈의 집 운영 등에 활용되는 지원금이였다. 종합하자면 90% 정도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지원이며 연간 174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이는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액의 30.5%라 할 수 있다. 많은 지원빈도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단체, 시민 및 옹호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합계는 각각 50억 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개별 기관당 평균지원액은 3억 원 미만으로 상대

2 보건복지가족부가 통보한 자료에서는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액 합계와 지원단체 리스트가 나와 있었다. 연구 편의상 개별 단체의 지원액은 '지원액/단체수'로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통계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적으로 크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 변동 추이를 살펴본다면 지원 단체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24.4%가 감액되었는데, 전반적 정책기조가 바뀐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감사혈액원을 통합하고 검사 자동화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232억 원을 지급했었던 이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2.7%가 증액되었다. 그 결정적 요인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변경되면서 출범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 166억 원 내외의 지원액이 고정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요인이 발생하여 다시금 13.7% 증액되었다.

## 14. 산림청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의 산림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이를 산업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이다. 이 부처는 국토의 64%나 차지하는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국에서는 산림정책, 산림자원 관리, 녹색일자리창출, 목재생산,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림이용국에서는 산지관리, 국유림관리, 산림휴양등산업무, 산림경영소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보호국에서는 산림환경보호, 도시숲경관, 산불방지, 치산복원, 산림병해충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돌보고 있다.

산림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그린레인저(한국루녹색회)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산림청이 1조 9,645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체에 대하여 2006~2007년까지는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

〈표 III-49〉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1	187,000	100.0%	187,000	.
합계	1	187,000	100.0%	187,000	.

〈표 III-50〉 산림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환경	그린레인저(한그루녹색회)

부터는 대폭 지원액을 높여 1억 6,700만 원, 2009년에는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1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의 제·개정과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운영지원과와 기획조정관 이외에, 위해예방정책국, 식품안전국(산하 영양정책관, 식품기준부), 의약품안전국(산하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국(산하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안전국(산하 의료기기심사부)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5억 원 정도로, 식품안전정보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 지원하였다. 이중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30억 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상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 자료부터 취합이 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한국회귀의약품센터와

〈표 III-5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 및 프로그램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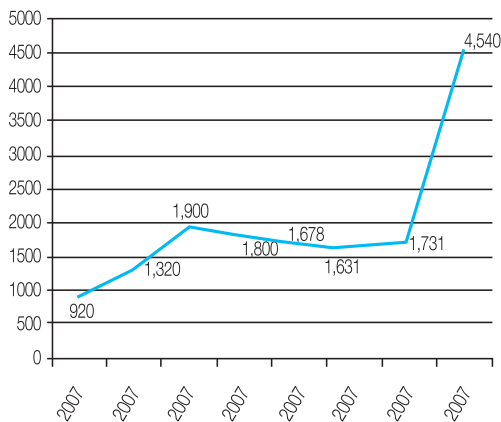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1	1,300,000	28.6%	1,300,000	.
기타 건강서비스	1	213,000	4.7%	213,000	.
법과 법률서비스	1	3,027,000	66.7%	3,027,000	.
합계	3	4,540,000	100.0%	1,513,333	1,419,078

〈표 III-5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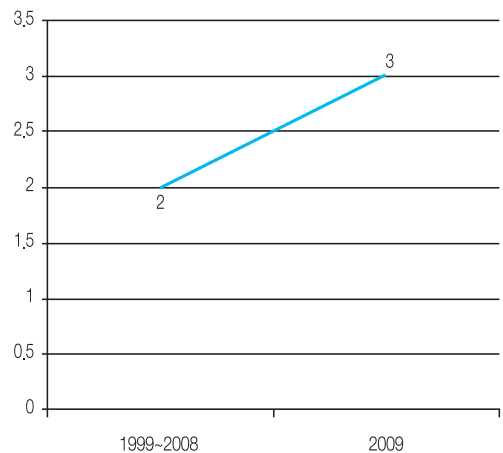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1999	2000-2001	2002-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2	2	2	2	2	2	2	3
지원총액	920	1,320	1,900	1,800	1,678	1,631	1,731	4,540
전년 대비 증감	-	43.5%	43.9%	-5.3%	-6.8%	-2.8%	6.1%	16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곳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09년부터 식품 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원단체가 3곳으로 늘었다. 지원액의 변동을 살펴보

〈표 III-5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 건강서비스	한국희귀약품센터
법과 법률서비스	식품안전정보센터

면 2000년도의 지원액 변동은 한국희귀약품센터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05~2007년까지는 지원액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전체 지원총액이 대폭 증액되었다. 하지만 과거 지원받았던 두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15억 원 내외로 감소하였다.

## 16. 여성부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부처이다. 아울러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이주여성 및 여성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여성부는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여성·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성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0억 원 정도로 104개의 비영리민간

〈표 III-54〉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6	79,000	2.0%	13,167	2,927
레크리에이션	1	17,000	0.4%	17,000	.
기타 교육	2	18,000	0.4%	9,000	4,243
연구	2	28,000	0.7%	14,000	1,414
기타 건강서비스	1	16,000	0.4%	16,000	.
사회서비스	29	491,000	12.2%	16,931	16,690
긴급상황과 난민	1	1,202,000	29.9%	1,202,000	.
환경	3	57,000	1.4%	19,000	3,606
경제·사회·지역개발	1	28,000	0.7%	28,000	.
고용 및 훈련	8	151,000	3.8%	18,875	6,334
시민 및 옹호단체	28	499,000	12.4%	17,821	6,201
법과 법률서비스	8	1,150,000	28.6%	143,750	331,227
정치조직	5	68,000	1.7%	13,600	4,827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	64,000	1.6%	64,000	.
국제적 행동	1	23,000	0.6%	23,000	.
종교집회 및 단체	2	23,000	0.6%	11,500	2,121
기업·직업단체·노조	5	112,000	2.8%	22,400	10,900
합계	104	4,026,000	100.0%	38,712	148,272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관 수로만 보면 정부부처 중에 4번째로 큰데, 지원액 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액수 총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개별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3,800만 원 내외이며, 중위값은 1,600만 원 내외로 작은 편이다. 2009년 현재 여성부가 666억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6%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과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2009년의 경우 ‘성매매 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을 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

〈표 III-55〉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4	58,000	1.4%	14,500	6,137
기타 건강서비스	1	23,000	0.6%	23,000	.
사회서비스	30	467,000	11.6%	15,567	7,290
긴급상황과 난민	1	1,202,000	29.9%	1,202,000	.
환경	9	201,000	5.0%	22,333	7,632
경제·사회·지역개발	1	15,000	0.4%	15,000	.
고용 및 훈련	24	398,000	9.9%	16,583	5,571
시민 및 옹호단체	15	261,000	6.5%	17,400	6,854
법과 법률서비스	8	1,114,000	27.7%	139,250	333,133
정치조직	5	73,000	1.8%	14,600	2,302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4	187,000	4.6%	46,750	41,916
국제적 행동	1	9,000	0.2%	9,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18,000	0.4%	18,000	.
합계	104	4,026,000	100.0%	38,712	148,272

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총 21억 6,400만 원(53.8%)이 지원되었고,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을 위하여 100개의 단체에 총 17억 원(42.2%)이 지원되었으며, ‘여성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1억 6,200만 원(4%)이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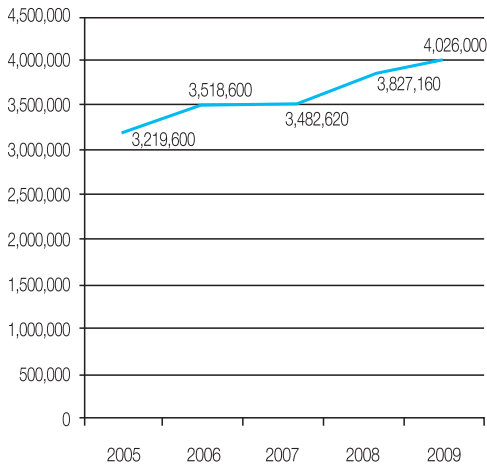
여성부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민 및 옹호단체’와 ‘사회서비스 단체’의 빈도가 각각 29건, 28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 및 훈련’, ‘법과 법률 서비스’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을 살펴 보면, ‘긴급상황과 난민’, ‘법과 법률서비스 관련 단체’에 각각 12억 원, 1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던 ‘사회서비스 단체’, ‘시민 및 옹호단체’의 평균지원액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형태의 반영

〈표 III-56〉 여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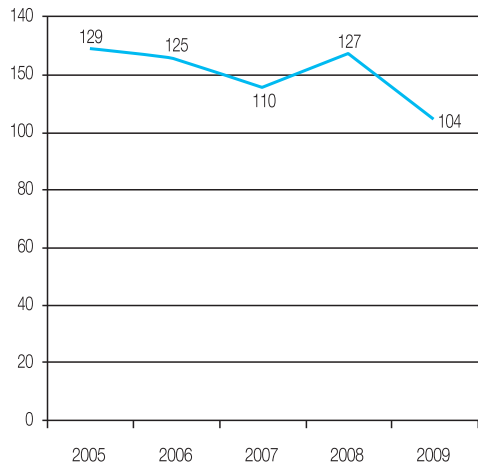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129	125	116	127	104
지원총액	3,219,600	3,518,600	3,482,620	3,827,160	4,026,000
전년 대비 증감	-	9.3%	-1.0%	9.9%	5.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9년 ‘여성공동협력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여러 단체의 신청을 받고 17억 원을 100개 기관에 나누어 배분하였다. 이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1개 기관당 평균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여성부 지원액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원액이 점증하고 있다. 지원하는 사업의 구성은 ‘성매매 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으로 동일하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가장 주목하여 보는 사업은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인데, 2006년도 20억 7천만 원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계없이 지원기관을 선정해 왔지만, 2009년도

〈표 Ⅲ-57〉 여성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또하나의문화 한국생활음악협회	문화미래이프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어린이문화예술학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레크리에이션	종이문화재단		
기타 교육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연구	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기타 건강서비스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사회서비스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다세움 성폭력상담소 부전현장상담센터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익산성폭력상담소 창업재활원 청소년지원시설로템의집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치매미술치료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이천 시지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마음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경원사회복지회부설성매매피해자 상담소withus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 부설대전열린 무안여성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너머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움사랑지역아동센터 재단법인천주교인천교구사회복지 회인천자모원 청소년문화공동체심대지기
긴급상황 및 난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환경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경제·사회·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용 및 훈련	광주YMCA여성개발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haja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여성평생자원개발원 오가니제이션요리	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시민 및 변호단체	21세기실버포럼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경주시지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귀포YWCA 안양YWCA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통영YWCA 한국농아인협회경북협회경산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천군여성장애인연대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부인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실업과빈곤극복을위한시흥시민 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여학사협회
법과 법률서비스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 담원대전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구리지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이주여성진흥원
정치조직	21세기여성정치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한국여성유권자울산연맹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자선 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국제적 행동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종교집회 및 단체	지혜로운여성	한울안운동	
기업·직업단체· 노동조합	IT여성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미산창원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민간자격협회

에는 사업비에 맞추어 내실이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17.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을 하고,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외국과의 문화협력 및 대외적 공보사업을 하고,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하여 국제구호단체, 개발협력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

〈표 III-5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요사업예산 (2009년)

주요사업 예산	총액
1. 민간단체 지원사업 : 59억 3,710만 원	
2. NGO봉사단파견 지원사업 : 25억 원	
3.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 1억 2천만 원	
4. NGO사업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 2,400만 원	
5. 개발협력인지강화 사업 : 7억 2천만 원	95,94억 원
6.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대국민 홍보행사 지원 : 4,950만 원	
7.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 지원 : 2,457만 원	
8. 사업행정비 : 2억 1,835만 원	

〈표 III-59〉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고등교육	22	402,644	4.30%	18,302	4,061
연구	2	25,800	0.30%	12,900	4,384
기타 건강서비스	4	214,000	2.30%	53,500	27,911
사회서비스	2	90,700	1.00%	45,350	39,103
주택	4	499,000	5.40%	124,750	57,708
시민 및 옹호단체	4	246,000	2.60%	61,500	33,161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	82,000	0.90%	82,000	.
국제적 행동	74	7,677,920	82.50%	103,756	285,867
기타(북한관련)	1	66,000	0.70%	66,000	.
합계	114	9,304,064	100.00%	81,615	232,951

〈표 III-60〉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17,000	0.20%	17,000	.
고등교육	1	24,570	0.30%	24,570	.
기타 교육	1	16,000	0.20%	16,000	.
사회서비스	1	98,000	1.10%	98,000	.
국제적 행동	110	9,148,494	98.30%	83,168	236,950
합계	114	9,304,064	100.00%	81,615	232,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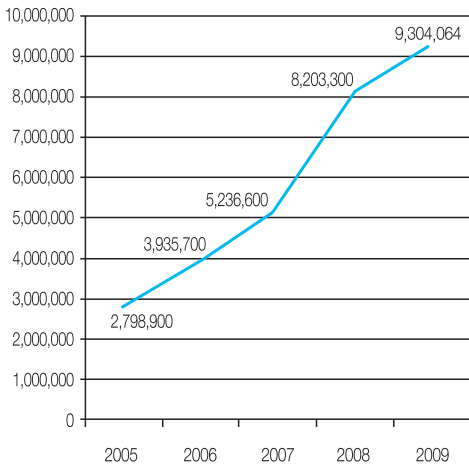
액은 연간 93억 원 정도이다. 지원기관 수로는 10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관 수로만 보면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큰데,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총액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개별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8,100만 원 내외이며, 중위값은 5,000만 원이다. 2009년 현재 외교통상부가 1조 2,57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액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정부예산 중에 개도국 원조 예산이 3,172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2.9%가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표 III-61〉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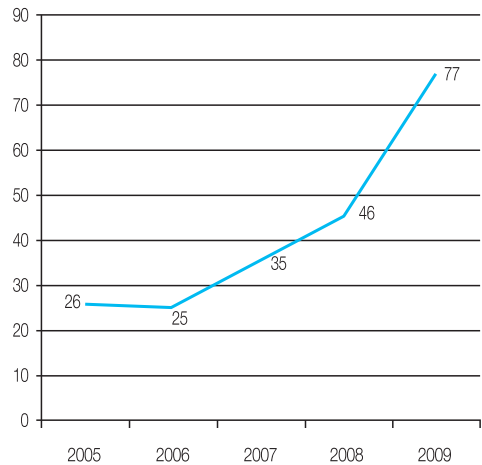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26	25	35	46	77
지원총액	2,798,900	3,935,700	5,236,600	8,203,300	9,304,064
전년 대비 증감	-	40.6%	33.1%	56.7%	13.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밝힌 2009년 NGO 지원예산은 대부분 ‘민간단체 지원사업’, ‘NGO봉사단 파견지원사업’으로 활용된다. 본 백서는 사업행정비를 제외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국제 행동단체 74개, 고등교육단체 22개로 나타났다. 국제행동단체의 경우 단체의 사명이 국제구호 분야로 한정된 경우도 있었고, 국내외 복지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복지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도 국제적 기반의 활발

〈표 III-62〉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고등교육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서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예수대학교	울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고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연구	국제지역개발연구원	한국국제개발연구소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서비스	은평천사원		
주택	주거복지연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시민 및 옹호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자선매개 및 봉사증진	함께하는사람들		
국제적 행동	광성	국경없는교육가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글로벌케어	대륙복지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동북아평화연대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삼동회인터내셔널
	서비스포피스	서울국제친선협회	세계선린회
	세이브드칠드런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럽-코리아재단
	유스클럽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코피온	평화캠프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노인복지회(국제노인헬프 에이지)	한국로타리총재단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한국제이티에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몽교류진흥협회	한끼의식사기금	한국희망재단
	한-베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중문화청소년협회
	기타(북한관련)	한민족복지재단	

한 활동을 한다고 알려진 단체의 경우 국제행동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원액으로 볼 경우에도 국제행동단체와 고등교육단체의 비중이 높았다. 이 중에 고등교육단체는 주로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에 참여한 ‘대학교’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0억 원 이상을 증액시켰기 때문이다. 2009년도의 증액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집중적 상승과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으로 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요인이 컸다.

## 1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하여 1996년에 공식 출범한 중앙정부 조직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성장 지원(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중소기업정책의 기획,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이외에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지원국, 기술혁신국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888억 5천만 원으로 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 농림식품수산부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부처에 속한다. 2009년 현재 중소기업청이 2조 2,296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4%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단체는 창업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이업종(異業種)중앙회로 4개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창업진흥원이 860억 원의 지원을 받는데, 이번 조사대상이 된 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이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청 지원금의 96.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총액인 3,904억 원의 22%나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과거 창업보육협회로 2008년 현재 42억 8천만 원의 지원을 받

〈표 III-63〉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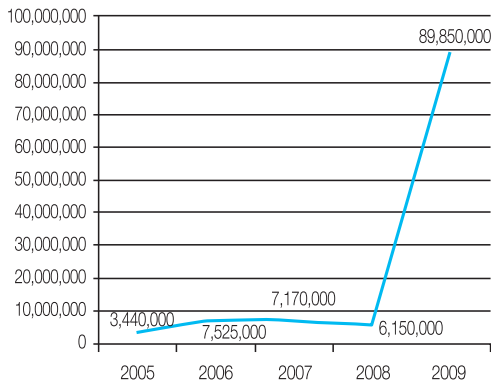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업·직업단체·노조	7	88,850,000	100.0%	12,692,857	11,790,938
합계	7	88,850,000	100.0%	12,692,857	11,790,938

〈표 III-64〉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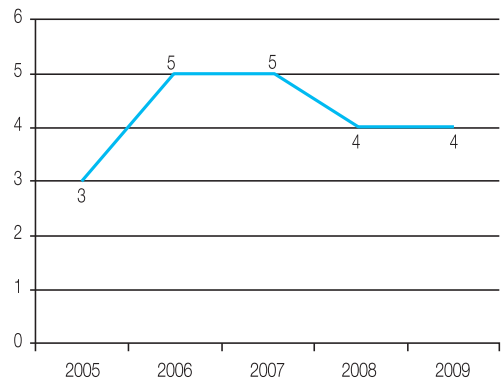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3	5	5	4	4
지원총액	3,440,000	7,525,000	7,170,000	6,150,000	88,850,000
전년 대비 증감	-	118.8%	-4.7%	-14.2%	1344.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은 바 있으며, 2009년부터 창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 여성벤처협회는 18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6억 1천만 원, 중소기업이업중앙회는 4억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들 단체의 유형과 프로그램 속성은 기업, 직업단체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분야, 다양한 기업운

〈표 III-65〉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영의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이업종(異業種)) 사이의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5년 118.8% 증액된 이래 정체되어왔다. 그러나 2009년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한국창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체 정부 지원액이 1,344.7% 증액되었다.

## 1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무역·투자·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2008년 신설된 정부부처이다. 지식경제부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며, 제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 이외에 산업경제실과 성장동력실을 두어 산업성장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2차관 산하에 무역투자실과 에너지자원실을 두어 수출과 교육의 확대균형을 꾀하고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지식경제부에서 통보한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9억 원으로 에너지시민연대에 에너지 절약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식경제부의 전체 예산이 13조 9,091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처는 부처 사업의 특성상 산업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영리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시민연대에 대한 지원액은 2007년까지 12억 원이었으며,

〈표 III-66〉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1	900,000	100.0%	900,000	.
합계	1	900,000	100.0%	900,000	.

〈표 III-67〉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환경	에너지시민연대

2008년 14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후에, 2009년 대폭 삭감되어 9억 원이 지원되었다.

## 20. 통일부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이다. 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이외에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을 두고 있다. 또한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출입국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남북피해자지원단을 운영,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로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8억 6천만 원 정도로 5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42억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고,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본 백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관도 통일부를 통하여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간주하고 이를 지원단체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일부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북한이탈

〈표 III-68〉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14,000	0,3%	14,000	.
초중등교육	8	215,660	4,4%	26,958	18,953
기타 교육	1	6,000	0,1%	6,000	.
연구	2	29,500	0,6%	14,750	354
사회서비스	39	4,104,640	84,4%	105,247	564,175
시민 및 옹호단체	4	59,700	1,2%	14,925	4,460
종교집회 및 단체	1	9,500	0,2%	9,500	.
기타(북한관련)	9	422,000	8,7%	46,889	100,657
합계	65	4,861,000	100,0%	74,785	437,938

주민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원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09년에는 총 48개 단체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예산 중에서 6억 6,31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09년 현재 통일부가 7,643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 전체 예산의 0.6%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취약계층지원(정신건강지원, 여성사회적응지원, 고령자지원)’, ‘시범공모사업지원(의료지원체계구축·운영, 전문상담인력양성, 학교인식개선사업, 가족적응지원)’, ‘자유공모사업지원’,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탈북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회서비스 단체’로서 탈북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운영, 학교인식개선 사업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6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북

〈표 Ⅲ-69〉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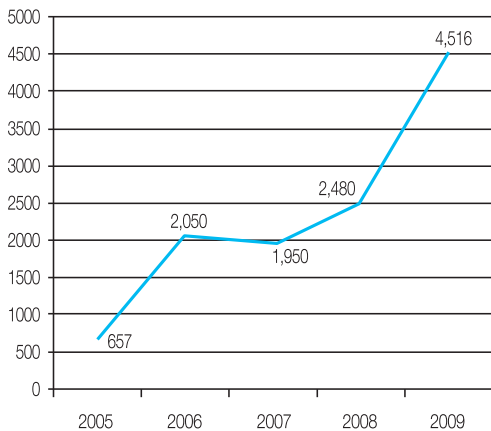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초중등교육	8	228,660	4.7%	28,583	17,499
고등교육	1	7,000	0.1%	7,000	.
기타 교육	1	15,000	0.3%	15,000	.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4	110,505	2.3%	27,626	11,655
기타 건강서비스	2	33,000	0.7%	16,500	2,121
사회서비스	42	4,076,500	83.9%	97,060	543,906
고용 및 훈련	3	42,900	0.9%	14,300	2,805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2	18,435	0.4%	9,218	5,964
기타(북한관련)	2	329,000	6.8%	164,500	212,839
합계	65	4,861,000	100.0%	74,785	437,938

〈표 Ⅲ-70〉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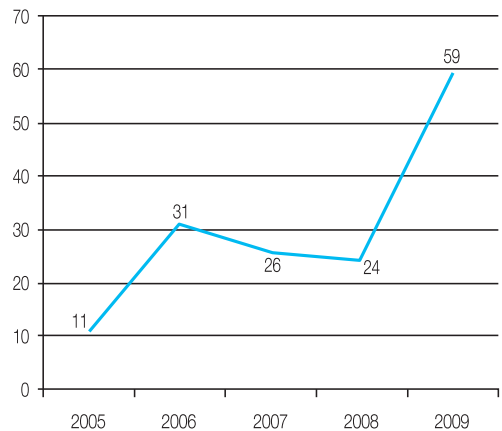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11	31	26	24	59
지원총액	657	2,050	1,950	2,480	4,516
전년 대비 증감		212.0%	-4.9%	27.2%	8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71〉 통일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초·중등교육	셋넷학교 하늘꿈학교 한울학교	여명학교 한꿈학교	자유터학교 한민족학교
기타 교육	한국인성개발연구원		
연구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사회서비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대구이주민지원센터 방화5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새터민지립후원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증령청소년수련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한국청소년가족상담원 한정협	가족 구미북한이주민지원센터(컨) 곰사리공동체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사랑담는사람들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한누리아동센터 희망나눔연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나르사공동체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생명의전화 우산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외 3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민 및 옹호단체	송의동지회 한국자유총연맹	탈북여성연대	탈북자동지회
종교집회 및 단체	목산교회		
기타(북한관련)	NK인포메이션센터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남북통합교육원 북한인권시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뉴라이트안보연합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예산이 3억여 원에서 17억 원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지원액이 42억 원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라는 통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3억 5천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 21. 특허청

특허청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표 III-72〉 특허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 및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초중등교육	1	20,000	1.3%	2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1,517,000	98.7%	1,517,000	.
합계	2	1,537,000	100.0%	768,500	1,058,539

〈표 III-73〉 특허청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초중등교육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허청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5억 3,700만 원으로 2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특허청은 한국여성발명협회에 1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특허청의 2009년 세출예산이 3,746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4% 정도가 지원금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허청의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1년 1억 4,7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매년 20~30%대의 증액을 하여, 2009년에는 15억 1,70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4억 4,500만 원, 즉 43.6% 정도가 증액되었다. 2005년도부터는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에 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의 대상을 확대했으나 그 지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재난 안전, 정보화,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 업무가 통합되면서 출범하였으며, 공무원 인사, 지방행정, 국민안전, 국가 정보화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그 등록을 주관하는 부처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협력과(2009년에는 안전정책협력과)를

〈표 III-74〉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09년)의 유형별 사업 평가

새터민 관련 사업	<p>새터민 청소년대상 사업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센터인 하나원을 통해 안정된 모집대상 채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은 바람직하나 남한청소년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됨. 교육의 경우 새터민 청소년 대상자 모집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새터민의 발굴 및 대상자의 선별적 선택이 요구됨.</p>
다문화 관련 사업	<p>일방적으로 한국을 소개하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배양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한국인들과의 유대관계 개선사업이 제시된 점은 매우 바람직했음. 하지만 다문화가정과의 네트워크가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네트워크 확보 및 활용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p>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사업	<p>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경정화 활동 중 대부분을 차지한 수중정화활동은 전문 스쿠버다이버들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속에 있는 오염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수중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나 오염물 제거에 관련한 정량적 데이터 제시가 부족하였음.</p>
사회통합 및 선진화운동	<p>사회통합 및 선진화 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 및 대상이 모호했고 방법론 또한 전략적이지 못하여 대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선진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지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의 선정, 마케팅 방법 등을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빈곤국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지원사업	<p>영수증 확보 및 카드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책 제시가 부족하며 기존에 해외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들의 수행능력은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러한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대상국가와의 문화교류 및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재외동포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 건설적인 사업으로 판단됨.</p>

〈표 III-75〉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0	305,000	6.2%	30,500	15,551
레크리에이션	1	28,000	0.6%	28,000	.
초중등교육	2	61,000	1.2%	30,500	27,577
기타 교육	2	77,000	1.6%	38,500	7,778
기타 건강서비스	4	85,000	1.7%	21,250	12,066
사회서비스	20	450,000	9.2%	22,500	12,513
긴급상황과 난민	4	109,000	2.2%	27,250	7,274
환경	16	554,000	11.3%	34,625	19,452
경제·사회·지역개발	4	119,000	2.4%	29,750	14,151
주택	2	67,000	1.4%	33,500	19,092
고용 및 훈련	1	14,000	0.3%	14,000	.
시민 및 옹호단체	34	1,163,000	23.7%	34,206	14,742
법과 법률서비스	12	299,000	6.1%	24,917	8,723
정치조직	2	52,000	1.1%	26,000	1,414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2	415,000	8.5%	34,583	18,436
국제적 행동	20	653,000	13.3%	32,650	19,738
종교집회 및 단체	2	76,000	1.6%	38,000	16,971
기업·직업단체·노조	3	96,000	2.0%	32,000	15,100
기타(북한관련)	11	277,000	5.7%	25,182	13,652
합계	162	4,900,000	100.0%	30,247	15,549

주무부서로 공익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매년 49억 원의 재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① 100대 국정과제, ② 저탄소 녹색성장,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④ 일자리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하였다. 신청 자격은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1999년 예산이 33조 613억 원 이상인 것을

〈표 III-76〉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 (2009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7	259,000	5.3%	37,000	16,693
레크리에이션	1	28,000	0.6%	28,000	.
초중등교육	3	62,000	1.3%	20,667	17,616
기타 건강서비스	4	94,000	1.9%	23,500	11,846
사회서비스	23	673,000	13.7%	29,261	14,605
긴급상황과 난민	4	81,000	1.7%	20,250	5,909
소득보조와 유지	2	50,000	1.0%	25,000	21,213
환경	23	693,000	14.1%	30,130	16,419
경제·사회·지역개발	4	117,000	2.4%	29,250	20,678
주택	1	47,000	1.0%	47,000	.
고용 및 훈련	4	76,000	1.6%	19,000	9,557
시민 및 옹호단체	28	1,001,000	20.4%	35,750	13,558
법과 법률서비스	16	514,000	10.5%	32,125	14,240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7	197,000	4.0%	28,143	13,874
국제적 행동	27	831,000	17.0%	30,778	19,825
기타(북한관련)	8	177,000	3.6%	22,125	9,094
합계	162	4,900,000	100.0%	30,247	15,549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체들은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행사 및 회의를 기획하여 해당 부분의 담론 및 여론 형성,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각 분야별로 진행된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표 III-74〉의 내용과 같았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포괄하여 지원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는 시민 및 옹호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국제적 행동, 사회서비스, 환경 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및 훈련, 레크리에이션, 주택, 교육,

〈표 III-77〉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문화와 예술	국학운동시민연합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한국효도문화원	국학원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한국민족서예인협회	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 충효예실천운동본부 한국정신문화연대
레크리에이션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초중등교육	한국우주소녀단	한꿈학교	
기타 교육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기타 건강서비스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백혈병환우회	장미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서비스	곰두리봉사회 미래를여는사람들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청소년과사람사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청소년연맹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터 사랑터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색동회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청소년사랑회
긴급상황 및 난민	피난처 한국해양구조단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인명구조연합회
환경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늘푸른희망연대 사랑의녹색운동본부 포럼푸른한국 한국해양보존운동본부 희망코리아	내무회녹색사랑봉사회 돌나라한농복구회 자연체험학교 한국그린피아연맹 환경감시중앙본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푸른아시아 환경과사람들(구청계)
경제·사회·지역사회개발	민관협력포럼 전국귀농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택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고용 및 훈련	한국청년센터		
시민 및 옹호단체	6.25남침피해유족회 무궁화문화포럼 불법광고를근절하는시민의모임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시민운동정보센터 애국단체총연합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찰소방공상자연합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시대정신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육삼동지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유시민연대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화장실협회	국민행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선진화운동중앙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신시대21 이클린연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총연맹 행복한미래문화를만드는사람들

〈표 Ⅲ-77〉 계속

구분	단체명		
법과 법률서비스	교통문화운동본부 신용사회만들기시민연합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해외여행안전협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소비자교육원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정치조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자선매개 및 봉사증진	나눔과기쁨 사랑나눔연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열린의사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새마을교통봉사대 한국112무선봉사단
국제적 행동	거래사랑복지협의회 국제외교안보포럼 굿피플 글로벌코리아포럼 태평양아시아협회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한일여성친선협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지구촌나눔운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한중문화협회	국제옥수수재단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글로벌비전 코피온(세계청년봉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일사회문화포럼
종교집회 및 단체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기업·직업단체· 노동조합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EAP협회
기타(북한관련)	거래하나되기운동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통일교육문화원	남북나눔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열린북한 한민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깨동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종교 등은 비중이 작았다. 지원액의 비중을 놓고 볼 때에는 시민 및 옹호단체, 국제적 행동, 사회서비스, 문화와 예술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추이는 큰 변화가 없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9억 원의 예산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지원단체 수만 118개에서 159개로 확대되었다.

### 23. 환경부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

〈표 III-78〉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현황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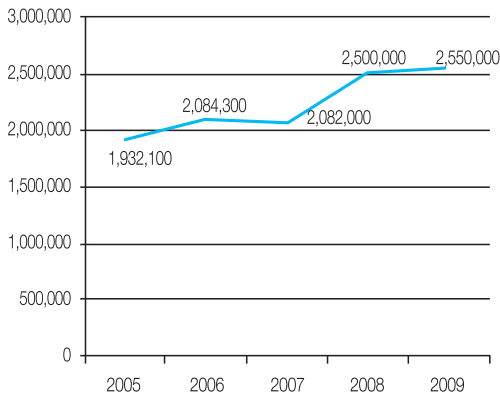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9	1,450,000	56.9%	161,111	189,127
동물	1	1,100,000	43.1%	1,100,000	.
합계	10	2,550,000	100.0%	255,000	346,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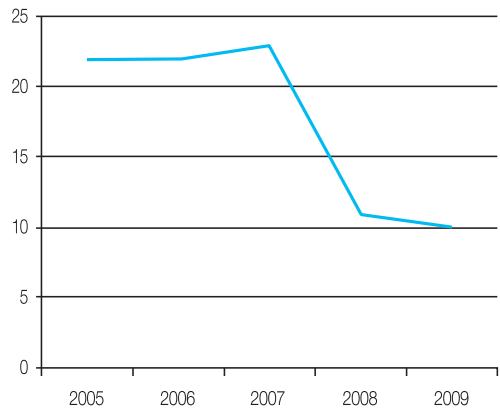
〈표 III-79〉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2005~2009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기관수	22	22	23	11	10
지원총액	1,932,100	2,084,300	2,082,000	2,500,000	2,550,000
전년 대비 증감	-	7.9%	-0.1%	20.1%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이다.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이외에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표 III-80〉 환경부가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2009년)

구분	단체명		
환경	무지개세상	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환경국민신탁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자연공원협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교육협회	환경보전협회
동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환경부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25억 5천만 원으로 10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연간 예산은 6조 64억 원이므로 전체 예산 대비 지원 액수는 극히 미미하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환경관련 단체 9개, 동물관련 단체 1개이다. 환경관련 단체 9곳이 평균 1억 6천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며, 중위값은 1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물관련 단체는 2008년 2월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곳에 11억 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08년도부터 12개가 급감하였다. 2008년도부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지원기관 수가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은 2008년도 20.1% 급증한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기준 검토

##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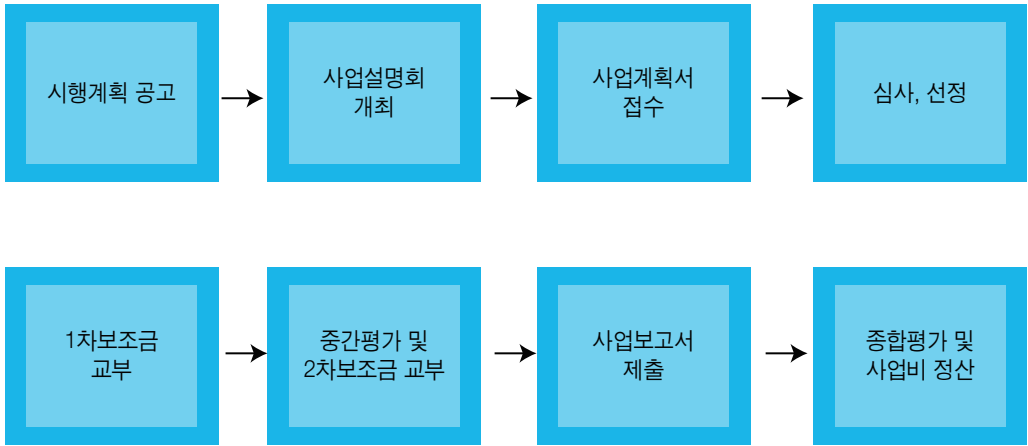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절차는 매년 고정적으로 특정 기관에 제공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대개 사업공모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사업공모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림 IV-1>과 같이 진행된다. 아래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지원절차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모사업 지원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신청안내' 문서 등으로 같음하는 경우도 많다. 연간 사업을 진행한 후에 사업보고서와 함께 평가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한 해의 지원사업이 마무리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를 확인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확인단계

-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경우에 우선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공모를 하는지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왔는지 확인해두어야 한다. 모든 공모사업은 각 부처 홈페이지 '공지' 혹은 '공고'게시판에 나와 있다. 과거의 공고현황을 보러

〈그림 IV-1〉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절차 (2009년)



면, ‘민간’, ‘단체’, ‘지원’, ‘공모’, ‘공고’라는 키워드가 도움이 된다.

- 이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조직의 사명, 조직의 주요 활동(경험)이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원래 지향하는 바와 관련이 없이 예산 지원만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 힘들뿐더러,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원인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할 경우에 그것이 우리 단체에 어울리는지 반드시 고민해보고, 관리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조직이 섬기는 이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계획서는 지원부처가 제공하는 서식과 작성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사업설명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공모사업의 취지와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부

처에 따라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모조차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 지원부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심사기준에 들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지원부처가 제공하는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고려하여 미리 시간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사업 공고가 게시되기 이전에 해당 부처의 관심 분야가 예측되는 경우 미리 대략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어 계획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3) 사업수행

-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애초에 계획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부처가 제시하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계처리 과정과 관련한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체의 잉여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지원부처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자료를 원하면 즉시 알려주고, 사업 진행과 관련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소통해야 한다. 믿고 맡기는 것이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안할 수 있다.
- 당해년도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이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을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만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4) 평가 및 보고

- 평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

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이다.

- 사업계획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해두고 이를 달성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드러내주는 것이 좋다. 이를 데면, ‘몇회의 ~한 활동을 하였다’는 것보다 ‘~에게 ~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록, 참여한 사람들(진행자, 대상자, 관련자)의 다양한 평가를 정리해두면 평가작업이 수월하고 정확해진다.

##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 검토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법령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여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특정한 주제를 주고 비영리민간단체가 그와 관련된 제안 사업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뉘는 것이다.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기준의 종합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모사업에 대한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심사기준표를 검토한 후 자주 언급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된 심사기준은 능력과 전문성, 효과성, 타당성, 적합성, 과거의 경험, 자기부담 및 책임성 등이었다. 여기 제시된 심사기준은 고려 빈도가 낮다고 무시될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연고’, ‘파트너십’ 등의 심사기준이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려 빈도가 낮더라도 대상자 만족은 효과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목표명확성은 타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아래 제시한 다양한 심사기준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높

다. 따라서 좋은 사업계획서는 아래의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2)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항 및 심사기준

다음은 부처별로 구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기준이다.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단체가 사업 제안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각 부처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표 IV-1〉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검토되는 주요 심사기준(2009년)

기준	고려빈도	의미
능력, 전문성	18	사업 수행할만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이 있음
파급효과, 효과성 평가결과활용가능성	18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양한 맥락에서도 적용점이 있어야 함→ 다만, 근거가 있어야 함
타당성	16	사업의 목적과 활동의 내용이 관련이 있음
적합성	13	공모 주체가 제시한 목적과 일치하는 주제의 사업임
과거 경험	11	과거에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예산적정성, 경제성	10	예산이 방만하지 않게 선용될 수 있음
자부담, 상근자 확보, 책임성	10	민간에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실현가능성	5	사업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함
공익성, 신뢰도, 재정상태	4	사업을 통해 이익을 채우지 않고, 사업수행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함
대응성, 사회문제해결	4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해야 함
독창성	4	필요하면서 관례적인 사업보다는 선도적인 사업을 제시해야 함
파트너쉽, 정책연계성	3	정부의 주요한 정책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 (예: 노동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협조적이어야 함)
만족도	2	과거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함
목표명확성	1	목표가 명확하면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평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음
지역연고	1	지역특화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연고가 요구되기도 함

(표 IV-2)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심사기준 (2009년~최근)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항 및 심사기준
경찰청	- 2010년부터 전국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시작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 예를 들어 정보생산위탁사업 관련하여 정보생산 방식(45), 정보제공방식(30), 단체역량(25)로 심사하여 선정함. - 기타 하도급분쟁조정, 소비자단체보조사업, 정보생산위탁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함.
교육과학기술부	-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글로벌교육협력지원, 고전문헌국역지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교직원단체파트너쉽형성기반조성, 한국바로알리기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와 진행함.
국가보훈처	-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 관련한 일부 기념사업을 기존 기념사업회, 숭모회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진행함.
국가인권위원회	- 단체당 1천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과제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함.
국토해양부	- 해양관련 비영리 공익단체 위주로 지원하며, 심사성적,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환경보전 등 사업에 대해 지원함.
노동부	- 일자리 창출 인프라확충 사업은 전문성 및 수행능력(30), 제안내용 적합성(20), 계획의 타당성(20),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20), 평가결과활용가능성(10)을 심사기준으로 삼음. -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사업은 사업목적적성(10), 사업계획타당성 및 충실성(25), 실현가능성(25), 효과성(25), 참신성(15)을 검토함. - 장애인식개선지원사업은 사업목적적합성(25), 사업계획타당성 적정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효과성(20)을 심사하여 지원함. - 고용평등상담실은 실적, 사례, 상담원 자질, 자문 활용, 고용평등인식개선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함. - 노동단체지원사업은 공익성, 실효성, 타당성, 예산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지역수요대응성(30), 사업수행능력/파트너십(20),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20), 전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40)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함. 이 때, 지자체 매칭보조, 근로빈곤층 밀집지역에서 고용복지통합, 저탄소녹색성장인력양성,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업인력양성사업 우대하였음. -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여성, 노숙인, 간질환자, 산업단지,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고령자,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타당성(40), 수행능력(40), 고용지원센터연계(20), 평가우수기관 가산점을 부여함.
농림식품수산부	- 도농교류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전체적합성, 효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기여도에 따라 심사함. - 기타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농어촌가치소비촉진홍보, 전국 으뜸농산물만남당, 농업경영인대회, 중국동포농업교육, 농어촌청소년대상, 농어촌 정보화지원, 농업인교육훈련, 국악방송, 농촌주택고쳐주기, 농촌출신 장학금, 농촌노인복지시설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도농교류협력사업, FAO한국협회운영지원, 한국수산물지원, 농산/과수/축산 직능단체 지원, 방역단체 지원, 위생인증기관지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민간감시 지원, 어업인 교육훈련, 어항청소 및 시설물안전점검 지원, 수산물출하조질사업,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원양산업지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수산과학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지원 등 다양한 농어업인, 축산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따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본부 등 지원함.
문화재청	- 문화유산방문교육의 경우, 최근까지의 경험과 실적, 인지도 및 신뢰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교사의 전문성, 상근 근무자 확보를 심사함.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경우 적합성, 독창성, 파급효과, 사업수행능력(자부담), 예산 타당성, 전년활동내용, 최근 공익활동을 검토하여 지원함.

(표 IV-2) 계속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항 및 심사기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경우 경험을, 지역다문화 프로그램은 내용심사를 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기존 성과와 계획을 심사하며, 지역사회문화예술활성화사업은 취지, 적합성, 사업전문성, 필요성, 지역연고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함.</li> <li>- 여타의 종교단체지원, 예절강사지원, 독립영화지원, 독서문학지원, 지역문화증진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예술인대회, 미술협회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음.</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미디어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체역량, 예산편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함.</li> <li>- 그 밖에 방송정책관련 지원, 전파여건개선, 방송/광고단체연합회지원, 디지털방송, 아리랑방송지원,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사업,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등이 진행됨.</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추진역량, 추진체계,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맞추어 심사하여 지원함.</li> <li>- 피해자복지센터 설치 위탁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조직및시설운영계획, 사업운영계획, 기타(위탁기관자부담) 등을 심사하여 지원함.</li> <li>- 그 밖에 소년보호협회를 지원하는 등 자체 계획에 의거 사업을 지원함.</li> </ul>
보건복지가족부 (현)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진레지원사업의 경우, 적합성(25), 목표달성가능성(25), 활용성 및 수혜자만족도(20), 효과성(15), 수행기관전문성(15)을 심사하여 지원하였음.</li> <li>- 가족문화조성사업은 적합성, 목표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수행기관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내용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하였음.</li> <li>- 노인복지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중점과제와의 연계성, 사업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기대효과, 경험 및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민간부담이 포함된 경우, 사업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경우, 수행경험이나 수행능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반영하였음. 여기에 3년 이상의 수행경험, 사업수행능력(설립목적, 조직인력, 기존사업성과, 발전가능성), 사업계획(목적목표의타당도, 대상자의 적절성,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파급력), 전반적 평가를 고려하여 심사하였음.</li> <li>- 휴먼네트워크사업수행기관공모사업의 경우 능력, 계획, 현황을 고려하였음.</li> <li>- 국민건강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타당성, 사업대상, 규모와 적절성, 수행방법 내용의 적절성, 조직인력의 적절성,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유사실적,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심사·지원하였음.</li> <li>- 그 밖에 아동청소년유해약물예방사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성폭력 피해 청소년위탁교육사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위탁, 중앙보육정보센터위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위탁, 청소년매체역량증진사업, 치매전문양성교육사업,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위탁,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권역교육기관 선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중앙관리기관, 영유아 부모대상 안 전사교 및 응급처치교육,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선정,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추진기관 선정, 장애인복지자리 시범사업,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공모, 아동청소년참여 프로그램 공모, 아동청소년 매체 활용능력 증진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공고가 이루어졌음.</li> <li>- 가족,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 청소년, 가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부(2010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li> </ul>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지원에관한규정에 따라 심리학회, 도박예방치유온라인구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지원을 위한 심사기준은 재정상태, 자체부담액, 사업의파급효과, 사업의타당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지원기준에의 적합성이었음.</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린레인저(한그루녹색회)에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li> </ul>
식품의약품 안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한국회귀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안전정보센터 고정하여 지원되고 있음.</li> </ul>

〈표 IV-2〉 계속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항 및 심사기준
여성부 (현)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의 경우 과제적합성(정책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독창성), 기대성과(파급효과, 경제성, 실현가능성), 시행능력(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예산의 적정성)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됨. 2010년에는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인권증진,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녹색생활실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하였음.</li> <li>- 기타 여성인력리더십교육수행기관, 지역맞춤형여성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홈페이지에 제시되었음.</li> <li>-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수의 사업 공모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li> </ul>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민간단체지원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등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심사하여 결정함.</li> </ul>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창업진흥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업중앙회 등에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li> </ul>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시민연대(에너지절약정책과)에 매년 7~14.5억씩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공모함</li> <li>- 통일과 관련한 사업은 민족화해국민협의회에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지원함. 북한이탈 주민 후원회의 경우 ‘민간공모사업’을 통하여 개별 기관당 1~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심사기준은 책임성과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경험, 파급효과, 인력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능력 등임.</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에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매년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활성화, 안전문화 재해재난극복, 국제교류협력 등 주제를 제안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음.</li> <li>- 심사기준으로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을 고려함.</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수의 사업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음식문화개선생활문화정착사업’의 경우 지원 공고가 게시되었음. 이 사업의 경우, 목적적합성(20), 대상/방법(20), 수행능력(20), 효과(30), 예산(10)을 심사기준으로 포함하였음.</li> </ul>



## V. 결론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실제로 포괄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백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을 받아, ‘한국NPO공동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2009년에 지원한 1,008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9년 이전에 지원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추가로 확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백서가 국내 최초이므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와 관련한 이론, 논의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으로 규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였고, 정부와 NPO와의 관계를 보완적 관계, 협

조직 관계, 대립적 관계로 나누어 한국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본 백서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의 양상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 내지는 협조적 관계를 상징한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제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한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유형분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분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백서에서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를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NPO를 분류하고 지원되는 사업을 분류하였다. 이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단체에 대한 포괄적 분류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중앙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한 23개의 중앙부처였다.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904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48조 3,368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해보면 정부예산의 0.00016%에 불과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처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까지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만으로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 현황은 과소 보고되었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만 한정된 연구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다시 지방정부 단위에서 개별 단체로 지원되는 유형의 지원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부예산, 개별 시설로 지원되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지원액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차년도 백서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의 평균은 43.8개 단체였으며,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69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처에 따라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 8,800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단체와 수백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균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농림식품수산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가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위 5개 부처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빈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문화재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과 지원빈도를 비교해보면 농림식품수산부를 제외하고는 지원빈도와 지원액이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자료를 확인해보니 특정 단체에 수백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가 보완적 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검토해보면, 지원빈도가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단체, 사회서비스, 시민사회단체, 기업·직업단체·노조, 국제적 행동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 순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600억 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41.1%나 차지하였다. 경제·사회·지역개발 등에도 883억 원 이상(전체 지원액의 22.6%)이 지원되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단체에 6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15.4%나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고액이 지원되는 경우는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며 고액 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책에서는 정부부처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 예산 대비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과거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단체의 수와 지원액의 추이, 변동의 사

유를 확인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지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지원 프로그램과 심사기준을 정리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과업을 확인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심사기준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된 심사기준은 능력과 전문성, 효과성, 타당성, 적합성, 과거의 경험, 자 기부담 및 책임성 등이었으며, 각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 백서의 의의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시도이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이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구분하여 외국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제적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데 실용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최초의 시도이므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외국의 경험과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지 못했는데, 차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비교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정부부처의 정보 공개 자료에 의존하면서, 정부부처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취합된 자료를 보면 부처 담당자별로 무엇이 비영리민간단체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았다. 차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사전에 조사하여 부처 간 취합 자료의 질에서 나타나는 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백서는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만을 검토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부하여, 지방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검토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각 지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 연구소에서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를 발간해주기를 기대한다.

연구주제 자체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비추어지지 않았나 우려가 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본 연구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자발적 노력과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정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를 기대한다.

## VI. 부록

## 1. 백서 작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과 고려 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하여 UN이 규정한 국제 NPO분류체계인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을 적용하였다. 이 체계는 존스홉킨스 비교비영리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 등 다양한 국가의 NPO를 분류하면서 만든 것이라 포괄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국제기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잘 정리되면 국가 간 비교에도 유용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부에 의해 지원받은 NPO를 분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NPO 명칭과 사업명 정도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검색, 한국NGO총람 등을 통하여 NPO의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그 기능에 따라 특정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료 검색을 해도 단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 1)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향하는 단체의 경우

하나의 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류가 어려웠

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국제구호를 병행하는 경우이다. 혹은 소비자운동(법과 법률서비스 분류)을 하는 단체가 문화사업,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의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그 예가 될 것이다. 혹은 성매매방지/성폭력 관련 상담을 하는 단체는 성매매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범법행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법과 법률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고, 상담을 통한 지원이라고 보면 사회서비스의 측면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가장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내역을 본다든지, 해당 단체의 정관을 검토하여 핵심기능을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가용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000여 건의 지원에 대해 이러한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다. 대신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사업, 조직의 목적과 사명 등을 확인하고, 주로 관계하는 부처가 어떠한지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그러한 정보로도 충분히 결론을 짓기 어려우면 기관명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 2)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존재하는 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존재하는 조직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관련 단체이다. 북한관련 단체도 그 이념적 정향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안보, 평화, 통일, 탈북이민자 지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존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적절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기본적 원칙은 안보, 평화, 통일을 기타항목(북한관련)으로 정리하고, 탈북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사업의 경우 우리 국민으로 이미 편입되었다고 보고 사회서비스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민의식 개혁, 국민의식 계몽, 문화시민운동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대한 분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준공공적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단체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 및 옹호단체'로 분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니는 단체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단체들이 같은 분류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3)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는 데 따른 어려움

이번 백서를 구성할 때 단체의 속성과 실제로 그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단체의 분류기준과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방식이어서 기관의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데에도 대체로 유용하고 수월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주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은 ‘인권’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면 ‘시민 및 대변’의 속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교육’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면 ‘기타 교육’으로 분류해 넣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이라면 ‘환경단체의 기능’, ‘초중등교육’의 기능을 모두 하였기에 한 범주로 포함하여 넣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하여 분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프로그램으로 환원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VI-1〉은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와 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분류작업 기준표이다.

이러한 분류과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이 취한 방법은 교차 분석의 방법이었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각자 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의견 일치를 모색하였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단체가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른 분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코딩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시켜 검토하면서 오류를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복합적인 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활동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는 각 단체에 대한 분류가 단체의 지향과는 다르게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2009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표 VI-1〉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분류기준 작업표(ICNPO 기준의 적용)

대분류	중분류	해당되는 NPO의 예	연구진 검토후 확정된 NPO 및 활동구분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100 문화와 예술	방송통신, 시각예술, 건축, 공예, 공연예술, 역사, 문학, 인문협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다목적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재 반환, 예절교육, 송모회(보훈처), 민족(역사), 역사바로세우기
	200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클럽,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조직 등	
	300 서비스 클럽	서비스 클럽, 다 목적 서비스 클럽 등	
2 교육	100 초중등교육	초, 중등 교육	사생대회, 학교의식개혁,
	200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	장학재단(한국노총, 농촌희망재단, 4H)
	300 기타 교육	직업/기술학교, 성인/평생교육, 다목적 교육조직 등	
	400 연구	의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등	학회, 연구회
3 건강	100 병원과 재활	병원, 재활병원	
	200 요양원	요양원	
	300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정신과병원, 정신보건치료, 위기개입, 다목적 정신건강조직 등	북한이탈자 정신건강지원
	400 기타 건강서비스	공공보건교육, 의료처치(주로 외래), 재활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다목적 보건서비스 조직 등	성산장기려선생기념회, 헌혈 봉사단
4 사회 서비스	100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주간보호, 청소년서비스, 청소년복지, 가족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자조 및 다른 대인사회서비스, 다목적 사회서비스 조직 등	Barrier-Free, 다문화인식개선, 가정폭력에 방교육, 초등학생 성교육, 성폭력 금지 프로그램* 탈북지원
	200 긴급상황 및 난민	재난/응급 예방, 구호 및 통제, 일시 쉼터, 피난처 지원, 다목적 응급 피난 지원 조직 등	
	300 소득보조 및 유지	소득 지원 및 보전, 물질 원조, 다목적 소득 지원 및 보전 조직 등	
5환경	100 환경	공해 감소 및 통제, 자연자원 보전 및 보호, 환경미화 및 open spaces, 다목적 환경조직 등	
	200 동물	동물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보존 및 보호, 수의서비스, 다목적 동물서비스 조직 등	

〈표 VI-1〉 계속

대분류	중분류	해당되는 NPO의 예	연구진 검토후 확정된 NPO 및 활동구분	
6 개발과 주거	100	경제·사회·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및 근린조직, 경제개발, 사 회개발, 다목적 경제, 사회, 지역사회 개발 조직 등	농수산물소비촉진, 수협, 농협, 귀농운동, 농촌개발,
	200	주택	주택 연합, 주거 지원, 다목적 주거 조 직 등	
	300	고용 및 훈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상담 및 지 도, 직업재활 및 지원 작업장, 다목적 고용 및 훈련 조직 등	
7 법, 옹호, 정치	100	시민 및 옹호단체	시민 결사체, 대면 조직, 시민권 협 회, 인증 연합, 다목적 시민 및 옹호 조직 등	민주화운동, 인권, 양성평등, 장애인식개 선, 장애인인권, 나라사랑, 국민의식개혁, 생활개혁, 문화시민운동, 탈북자 연대
	200	법과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법법자 재활, 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 호 및 조직, 다목적 법률 서비스 조 직 등	성매매금지 프로그램
	300	정치조직	정당, 정치행동위원회, 다목적 정치 조직 등	
8 자선매개 및 봉사 증진	100	교부금 모금 조직	교부금 모금 재단	
	200	다른 자선 매개 및 자 원봉사 증진	자원봉사증진 및 지원, 다목적 자선 매개 및 봉사조직 등	
9 국제	100	국제적 행동	교류/우호/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조직, 국제재단 및 구호조직, 국제 인 권 및 평화조직, 다목적 국제조직 등	국제학술대회, 재외동포, 국제문화제 등록, 한국바로 알리기
10 종교	100	종교집회 및 단체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유대인 회당, 힌두사원, 신사, 무슬림 모스크, 복합 종교조직 등	
11 경영 및 전문직 조직, 노조	100	기업·직업단체· 노동조합	기업연합, 전문직 연합, 노조, 다목적 기업, 전문지 결사 및 노조 외	
12 기타	100	기타	기타	북한한 관련 구호, 통일, 평화, 안보

NPO리스트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는 이유는 잘못  
분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sup>1</sup>

1 문의하거나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백서 연구진이나 한국NPO공동회의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 2.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정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 )는 부여된 코드이다.

문화와 예술 (1100)	DTV코리아	강릉단오제보존회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광주북문문화재지킴이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학운동시민연합	국학원
	남원문화원	남원문화지킴이	내셔널트러스트
	농어민신문사	대구미디어교육연구소	대구시니어문화유산지킴이
	대동문화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제작사협회
	두들쟁이타래	또하나의문화	마포공동체라디오
	문화미레이프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베델선생기념사업회	봉림
	부산영상포럼	불교문화재연구소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사회문화나눔협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신문사
	서울예술단	성균관유도회	성남문화지킴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수원지기학교	슬로푸드문화원
	시민문화회의	시청자영상제작단	신라문화원
	아름지기	안동문화지킴이	안동근의사승모회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예술경영지원센터	웃칠문화연구원
	윤임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울산미디어연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익산가정사랑학교	장애인문화공간
	전주문화지킴이(시민행동2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통문화사랑모임
	전통문화진흥회	전통우리음식진흥회	제주문화재지킴이
	조문국의성문화유산보존회	종묘제례및제례악보존회	진주성지킴이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청풍영상위원회
	충주전통문화회	충효예실천운동본부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가족문화원	한국고미술협회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미술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생활음악협회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의재발견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한국전레원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문화와 예술 (1100)	한국정신문화연대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한국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판소리보존회	
	한국효도문화원	한글문화연대	한밭문화마당	
	해반문화사랑회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현정회	
	화성연구회			
레크리에이션 (1200)	대한치어리딩협회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종이문화재단	
초중등교육 (2100)	셋넷학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여명학교	
	자유터학교	하늘꿈학교	한국우주소녀단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꿈학교	한민족학교	
	한울학교			
고등교육 (2200)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서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침암대학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예수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동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기타 교육 (2300)	한국인성개발연구원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연구 (2400)	Korea Academy For Educators		Republik Center of Education	
	국제지역개발연구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정연구센터	대한양계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말라노한이문화연구원	부산사회조사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상고사학회	서울문화사학회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여성문화유산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위례역사문화연구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재아르헨티나이민문화연구원	전문문화연구원	전통문화재단연구원	

연구 (2400)	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국제개발연구소	한국국제사법학회
	한국노사문제연구원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선진노사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중자연구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지역고용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배언어문화연구소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3300)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기타 건강서비스 (3400)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백혈병환우회	
기타 건강서비스 (3400)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희귀약품센터
사회서비스 (4100)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가족	간디문화센터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관	경원사회복지회부설성매매피해자상담소withus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이천시지회		곰두리봉사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구미북한이주민지원센터(건)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꿈사리공동체	나르사공동체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터
	농촌희망재단	느티나무마을	다세움
	다솜동지복지재단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이주민지원센터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부설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돈보스코정분문화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마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무안여성상담센터
	미래를여는사람들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방화5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전현장상담센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랑담는사람들
	사랑터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	사회복지법인너머

사회서비스(4100)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새움터	새터민자립후원회	
	색동회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생명의전화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실로암사람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용인성폭력상담소	우리집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움사랑지역아동센터	
	울산YWCA·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울산성매매피해자생활시설씨밀레			
	은평천사원	익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재단법인천주교인천교구사회복지회인천자모원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중랑청소년수련관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창암재활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소년과사람사랑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청소년지원시설로렘의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충북파라미터청소년협회	치매미술치료협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외 3	
	틱움복지재단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제니가족지원센터	한국직장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청소년가족상담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사랑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합	한누리아동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한정협	희망나눔연대	
	긴급상황 및 난민 (4200)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피난처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인명구조연합회	한국해양구조단	
소득보조와 유지 (4300)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농촌희망재단		
환경 (5100)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내무회녹색사랑봉사회	녹색누리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늘푸른희망연대	
	돌나라한농복구회	무지개세상	미래가족문화연합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랑의녹색운동본부	생명의숲국민운동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생태지평		

환경 (5100)	에너지시민연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체험학교	자연환경국민신탁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럼푸른한국
	푸른아시아	한국그린피어연맹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한국수중환경연합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자연공원협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국환경교육협회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해병이바다살리기운동본부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환경감시중앙본부
	환경과사람들(구청계)	환경보전협회	희망코리아
동물 (5200)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경제·사회·지역사회 개발 (6100)	광주전남행복발전연구소	낙농자조금위원회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농촌정보문화센터	민관협력포럼
	새마을운동중앙회	생활개선중앙회	수협중앙회
	양돈자조금위원회	양육자조금위원회	양봉협회
	오리자조금위원회	육계및산란계자조금위원회	재단법인지역재단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우자조금위원회	
	주택 (6200)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거복지연대
고용 및 훈련 (6300)	광주YMCA여성개발센터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haja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여성평생자원개발원	오가니제이션요리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인재뱅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청년센터
시민 및 옹호단체 (7100)	21세기실버포럼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	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6.25남침피해유족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경북지체장애인협회경주시지회	경찰소방공상자연합회
	고양시민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국민행동본부
	나눔과미래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대(9개단체)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목포KYC	무궁화문화포럼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시민 및 옹호단체 (7100)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산장애인부모회	불법광고를근절하는시민의모임	
	서귀포YWCA	서울KYC	서천군여성장애인연대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진화운동중앙회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시대정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시민운동정보센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신시대21	안산여성노동자회	
	실업과빈곤극복을위한시흥시민연대		안양YWCA	
	애국단체총연합회	언론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주시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육삼동지회	이클린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자유교육연합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시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부산가톨릭공부방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시설생활인권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	
	제주장애인권포럼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충북여성민우회	탈북여성연대	
	탈북자동지회	통영YWCA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령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미래포럼	
	한국농아인협회경북협회경산지부		한국부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산하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학사협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주부클럽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화장실협회	행복한미래문화를만드는사람들		
	법과 법률서비스 (7200)	광고소비자시민연대	교통문화운동본부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	
소년보호협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법과 법률서비스 (7200)	소비자시민모임	식품안전정보센터	신용사회만들기시민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구리지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이주여성진흥원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국해외여행안전협회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정치조직 (7300)	21세기여성정치연합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울산연맹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자신 매개 및 자원 봉사 증진 (8200)	나눔과기쁨	녹색어머니중앙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랑나눔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열린사회
	한국112무선봉사단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함께하는사람들		
국제적 행동 (9100)	COMOS한국위원회	FAO한국협회	The Korea Society
	UNESCO한국위원회	거래사랑복지협의회	광성
	국경없는교육가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외교안보포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귀한동포연합총회
	글로벌비전	글로벌케어	글로벌코리아포럼
	대련외국어학원부설한국문화원	대륙복지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동북아평화연대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회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삼동화인터내셔널	서비스포피스
	서울국제친선협회	세계선린회	세이버츨드런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럽-코리아재단	유스클럽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동포청년연대
	태평양아시아협회	평화캠프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노인복지회(국제노인헬프페이지)	
	한국로타리총재단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희망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몽교류진흥협회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한-베재단

국제적 행동 (9100)	한일사회문화포럼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문화청소년협회
	한중문화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종교집회 및 단체 (10100)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목산교회	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지혜로운여성
	통도사자비원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울안운동
기업·직업단체·노동조합 (11100)	IT여성기업인협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김생산어민연합회
	낙농진흥회	노사공포럼	노사문제협의회
	대한간호협회산하 보건간호사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미래노사발전연대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에비대대령연합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총연합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동조합	일진전기반월공장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국버섯협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자주연합회김해시지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한우협회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중소기업이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EAP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어양식협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생선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송어양식협회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장흥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자라생산지협회
	한국전북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조정중앙협회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마음유기농영농조합	한우협회	항만예인선노동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기타(북한관련) (12100)	NK인포메이션센터	NK지식인연대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남북나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통합교육원
	뉴라이트안보연합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열린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통일교육문화원	한민족복지재단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 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2.29)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附則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05)까지 생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

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참고문헌

- 국제청 (2009). 『2009년 귀속 알기 쉬운 연말정산』.  
 \_\_\_\_\_ (2009). 『국제통계연보』.  
 김준기 (2006).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대한민국정부 (2009). 『2009년 수정예산안』.  
 박태규 (2000). “한국의 비영리 부문의 경제적 규모 추계”. 한국비영리학회 창립총회 발표문  
 임승빈 (2009). 『정부와 NGO』, 서울: 대영문화사.  
 조희연 (2001). 『NGO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희동』, 한겨레신문사.  
 주성수 (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사)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편찬위원회 (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안전부 (2008). 『2008행정안전부백서』.  
 \_\_\_\_\_ (2009). 『2009 민간단체 공익사업 설명회 자료집』.  
 \_\_\_\_\_ (2010).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_\_\_\_\_ (20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편람』.  
 박상필 (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정보』 33(1), 261-278.  
 신광영 (1999). “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8(1) 29-67.  
 권해수 (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0(1).  
 김준기 (2000). “한국에서의 ‘제3자적 정부’에 대한 논의”. 행정논총, 39(2) 19-46.  
 신희권 (1999).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취구논문.  
 오재일 (2000).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  
 미나 발표논문집.
- Hansmann, Henry B.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Yale law Journal*. 89(5): 835-898.  
 Kollock (1998). Social Dilemmas: The Anatomy of Cooper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Salamon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2nd ed). 이형진 역. 『NP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Smith, S. R, Grønbjerg, K. A. (2006).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Powell, W. W., Steinberg,  
 R. (2006). *The Non-Profit Sector—A Research Handbook*(2nd ed.). Yale University Press.  
 UN (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World Bank (2007).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A Sourceboo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CSO/Resources/ConsultationsSourcebook\\_Feb2007.pdf](http://siteresources.worldbank.org/CSO/Resources/ConsultationsSourcebook_Feb2007.pdf))

## 정보공개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외 22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정보공개 자료

## 인터넷 자료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한 모든 중앙정부부처 홈페이지  
 2009~2010년 4월초 민간 단체 지원 공고, 고시 참조  
 2009년 정부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염태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공동연구원: 김희정(한국NPO공동회의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정의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1판 1쇄 펴냄 2010년 6월 21일

지은이 조홍식 외

펴낸이 이일하

펴낸곳 한국NPO공동회의

출판등록 2010. 6. 7. 제 300-2010-76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4층

대표전화 02-735-0067~9 | 팩스 02-735-0065

E-Mail npokorea@npokorea.kr | Homepage www.npokorea.kr

값 15,000원

© 한국NPO공동회의 2010

ISBN 978-89-964604-0-4 93060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